
복지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복지정책과
기 정 액	9,552,907천원	요 구 액	294,471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11,583	27,479	3,000	0	0	24,479	4,652	
경상적세외수입	3,257	8,671	3,000	0	0	8,671	8,414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보훈회관 임대수입	0	6,545	0	0	0	6,545	6,545	· 세입내용 : 김포시 보훈회관 임대료 납부(재향군인회) · 산출내역 : 월 60만원 * 12개월 · 증감사유 : 26년 신규 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보훈단체 사업지원 이자수입(오라니장터3.1 만세운동기념사업회)	0	13	0	0	0	13	13	· 세입내용 : 2025년 보훈단체 사업지원 (오라니장터3.1만세운동기념사업회) · 증감사유 : 정산이자 13,42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운영 이자수입	0	0	0	0	0	0	0	· 세입내용 :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운영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24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이자수입	0	0	0	0	0	0	0	· 세입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63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이자수입	0	0	0	0	0	0	0	· 세입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 증감사유 : 정산 이자 49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이자수입	0	0	0	0	0	0	0	· 세입내용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46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이자수입	0	0	0	0	0	0	0	· 세입내용 :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3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이자수입(시비)	0	21	0	0	0	21	21	· 세입내용 :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21,09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김포종합사회복지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퇴직 적립금 이자수입	0	24	0	0	0	24	24	· 세입내용 : 김포종합사회복지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퇴직적립금 이자수입 · 증감사유 : 퇴직적립금 이자 24,81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자수입(시비)	0	1,728	0	0	0	1,728	1,728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1,728,81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자수입	0	34	0	0	0	34	34	· 세입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34,08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이자수입(시비)	0	43	0	0	0	43	43	· 세입내용 :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43,030원 발생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지자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이자수입(시비)	0	35	0	0	0	35	35	· 세입내용 : 지자체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35,97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김포복지재단 상반기 이자수입	0	215	0	0	0	215	215	· 세입내용 : 김포복지재단 상반기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215,900원 발생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상반기 보통예금 이자수입	0	13	0	0	0	13	13	· 세입내용 : 상반기 보통예금 이자수입 · 증감사유 : 정산이자 13,760원 발생
임시적세외수입		7,646	15,488	0	0	0	15,488	7,842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6,001	5,626	0	0	0	5,626	△375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 잔액(시비) · 증감사유 : 시비 집행잔액 발생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가사간병사업집행잔액	549	254	0	0	0	254	△295	· 세입내용 : 2025년 가사간병사업 집행잔액(시비) · 증감사유 : 시비 집행잔액 발생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일상돌봄사업 집행잔액	740	1,306	0	0	0	1,306	566	· 세입내용 :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비 집행잔액 · 증감사유 : 시비 집행잔액 발생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지역사회보장조사 집행잔액	0	3,252	0	0	0	3,252	3,252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사회보장조사 도비보조 사업 집행잔액(시비) · 증감사유 : 시비 집행잔액 발생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1년 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적립 금 반납	0	2,348	0	0	0	2,348	2,348	· 세입내용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퇴직적립금 반납 · 증감사유 : 1년미만 근무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1년미만 근무 퇴직자 퇴직 적립금 반납	0	299	0	0	0	299	299	· 세입내용 :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퇴직적립금 반납 · 증감사유 : 1년미만 근무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해지 환급금(제2종합사회복지관)	0	2,035	0	0	0	2,035	2,035	· 세입내용 :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 해지 환급금(제2종합사회복지관) · 증감사유 : 공용차량 차량보험 일관가입에 따른 기존보험 해지 환급금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6년 보조금 점검에 따른 환수금(일남전참 전자회 퇴직적립금 과 지급분)	0	0	0	0	0	0	0	· 세입내용 : 2026년 보조금 점검에 따른 환수금 (일남전참회 퇴직적립금 과지급분) · 증감사유 : 퇴직적립금 과지급분 3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6년 보조금 점검에 따른 환수금(상이군경회 퇴직적립금 과지급분)	0	0	0	0	0	0	0	· 세입내용 : 2026년 보조금 점검에 따른 환수금 (상이군경회 퇴직적립금 과지급분) · 증감사유 : 퇴직적립금 과지급분 60원 반납
	기타수입 /그외수입 ◎간급복지지원금 과다부담 공제금	0	4	0	0	0	4	4	· 세입내용 : 긴급지원의료비 환불금 · 증감사유 : 긴급지원의료비 과다부담공제 4,530원 환급
	기타수입 /그외수입 ◎2025년 김포시 단체상해 공제 정산 환급금(한국 사회복지공제회)	333	359	0	0	0	359	26	· 세입내용 : 2025년 김포시 지원 단체상해공제 정산(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증감사유 : 2025년 김포시 지원 단체상해공제 해지인원에 따른 정산 차액 증가
	기타수입 /그외수입 ◎2026년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23	5	0	0	0	5	△18	· 세입내용 : 2026년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금 · 증감사유 : 2026년 유류구매카드 이용금액 감소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680	320	0	0	0	320	△360	
	과태료 /기타과태료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 보수교육미이수자 과태료	680	320	0	0	0	320	△360	· 세입내용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미이수자 과태료 · 증감사유 : 과태료 납부대상 감소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316	52,875	0	0	0	52,875	11,559	
보전수입등		41,316	52,875	0	0	0	52,875	11,559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및이자		28,007	34,326	0	0	0	34,326	6,319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 증감사유 :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및이자		2,564	1,714	0	0	0	1,714	△850	· 세입내용 :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 증감사유 :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비)		3,455	6,299	0	0	0	6,299	2,844	· 세입내용 :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 증감사유 :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고독사예방관리사업 이자반납 (김포종합사회복지관)		0	44	0	0	0	44	44	· 세입내용 : 2025년 고독사예방관리사업 이자 반납(김포종합사회복지관) · 증감사유 :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고독사예방관리사업 이자반납 (김포제2종합사회복지관)		0	45	0	0	0	45	45	· 세입내용 : 2025년 고독사예방관리사업 이자 반납(김포제2종합사회복지관) · 증감사유 : 국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및이자		6,001	7,355	0	0	0	7,355	1,354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 증감사유 : 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집행잔액및 이자		549	288	0	0	0	288	△261	· 세입내용 :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 증감사유 : 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도비)		740	1,349	0	0	0	1,349	609	· 세입내용 :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 증감사유 : 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고독사예방관리사업 이자반납 (김포종합사회복지관)		0	26	0	0	0	26	26	· 세입내용 : 2025년 고독사예방관리사업 이자 반납(김포종합사회복지관) · 증감사유 : 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고독사예방관리사업 이자반납 (김포제2종합사회복지관)		0	27	0	0	0	27	27	· 세입내용 : 2025년 고독사예방관리사업 이자 반납(김포제2종합사회복지관) · 증감사유 : 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지역사회보장조사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0	1,393	0	0	0	1,393	1,393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사회보장조사 도비보조 사업 집행잔액 · 증감사유 : 도비 집행잔액 발생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지역사회보장조사 도비보조사업 이자		0	9	0	0	0	9	9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사회보장조사 도비보조 사업 이자 · 증감사유 : 도비 반납이자 발생

김포복지재단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23번길 52-15
사업규모	김포복지재단 1개소		
사업목적	김포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대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해당조례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290,162	1,284,029	1,304,509	0	0	-20,480	-6,13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90,162	1,284,029	1,304,509			-20,480	-6,13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 20,480	
김포복지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출연금 : 경정(1,284,029,000원)-기정(1,304,509,000원)	= - 20,480	

□ 예산요구 사유

-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추계 반영에 따른 예산 변경

□ 예산증감 사유

-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보험부담금 감소 반영 5,000천원 감액
- 사무실 정보통신교체비용 예산절감으로 인한 2,850천원 감액
- 업무대행수당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4,800천원 감액
- 인건비 수당 항목 중 정액급식비 부족분 2,640천원 증액
- 대표이사 퇴임에 따른 인건비 6,070천원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반영	
일자	2025.11.	-	-	-	-	-	-	-	-	2025.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12. :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제12회 62일간의나눔릴레이(목표 : 1,000,000천원 모금액 : 1,363,038천원),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270가구 -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161건, 우리김포긴급지원 1,275건 (보훈취약계층 699건) - 정기결연지원사업 1,938건, 미래세대성장사업 67건, 명절지원사업 1,711건/134개소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42건, 차량지원사업 1개소 - 나눔교육사업 10회,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지원사업 12회, 복지시설컨설팅지원사업 17회 - 시민모니터링단 18회, 복지협력네트워크 12회, 업무협약 1회
2025	-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70건, 우리김포긴급지원 609건, 보훈취약계층지원 595건 - 정기결연지원사업 1,723건, 미래세대성장사업 162건, 명절지원사업 1,784건/281개소 -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311가구,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73건,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공모사업 11건 - 나눔교육 10건,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20건, 힐링지원사업 1건, 복지시설컨설팅사업 17건 , 복지협력네트워크 22건
2026	- 맞춤형행복나눔지원사업 37건, 우리김포긴급지원 256건, 보훈취약계층지원 126건 - 정기결연지원사업 926건, 미래세대성장사업 61건, 명절지원사업 526건/261개소 - 나눔천사시민서포터즈 20가구,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44건 , 사회복지시설단체지원공모사업 18건 - 나눔교육 3건,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4건, 복지시설컨설팅사업 3건, 복지협력네트워크 3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145,042	945,558	-	199,484	
2025	1,290,162	1,248,323	-	41,839	
2026	1,304,509	649,076	-	655,43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혜란	전화	2619
-----	-------	------------	-----	------------	----	------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6. 7.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임시주거시설 6개소		
사업목적	임시주거시설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를 통해 시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이용에 편의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해구호법	제4조의2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조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480	2,730	0	0	0	2,730	-750	
국비		0					0	
도비	3,480	2,730				2,730	-75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30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신규설치 : 440,000원*3개소	= 1,320	
		· 노후설치 : 470,000원*3개소	= 1,410	

□ 예산요구 사유

-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의 설치(교체)로 재난발생 시 주민들의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에 편의도모 (도비 100%)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지정된 임시주거시설(대곶면 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과 노후화된 안내표지판이 부착된 기존 임시주거시설의 안내표지판(통진문화회관 등 3개소)을 신규·교체 설치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5. : 안내표지판 점검 및 대상지 경기도 수요조사 제출
 - 2026. 06. :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교부
 - 2026. 07. ~ 2026. 09. : 안내표지판 설치
 - 2026. 10 : 안내표지판 설치 결과 경기도 보고 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노후화된 안내표지판 5개소 및 신규 지정 안내표지판 7개소 설치
2025	· 노후화된 안내표지판 4개소 및 신규 지정 안내표지판 4개소 설치
2026	· 노후화 안내표지판 3개소 및 신규 지정 안내표지판 3개소 설치 장소 선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150	5,150	-	-	
2025	3,480	3,480	-	-	
2026	2,730	2,730	-	-	7.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규모	안내표지판 설치 6개소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730
부기명 (세부사업)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교체 지원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8
-----	-------	----------	-----	----------	----	------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50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5조 제1항
		제8조(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의 운영경비와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589,648	1,559,566	1,581,817	0	0	-22,251	-30,08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89,648	1,559,566	1,581,817			-22,251	-30,08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251	
김포시제2종합 사회복지관 운영비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 경정(1,065,718,000원) - 기정(1,087,969,000원)	= -22,251	

□ 예산요구 사유

- 직원 입퇴사 변동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육아휴직 대체자, 입.퇴사 종사자간 호봉 차이 등에 의한 인건비 차액분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
일자	2025.11.	-	-	-	-	-	-	-	2022.9.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2026.12 :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사례관리기능 -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진행횟수 2,176건, 연인원 18,422명) - 이주배경아동사례지원 ‘우리다온’ (진행횟수 718건, 연인원 772명) ○서비스제공기능 - 글로벌가족소통강화사업, 부모역량강화사업, 방학돌봄교실 등 (진행횟수 336건, 연인원 3,024명) - 경제적지원, 식생활지원, 우리동네먹거리네트워크 등 (진행횟수 398건, 연인원 5,101명) - 교육문화사업-영유아, 라인댄스, 정리수납 등 (진행횟수 1,017건, 연인원 13,015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마을에서하루살기, 주민동아리지원사업, 토요프로그램 등 (진행횟수 270건, 연인원 3,881명) - 후원개발 및 관리 (진행횟수 191건, 연인원 2,982명) - 자원봉사개발 및 관리 (진행횟수 1,080 건, 연인원 1,250명) - MOU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활동, 실습지도 등(진행횟수 240건, 연인원 308명) - 아이성장놀이터, 시끌벅적가족도서관 등 (진행횟수 1,146건, 연인원 9,822명) ○공모사업 - 이주배경청소년효능감증진 및 진로성장지원프로그램’step-up’ (지원금 51,600천원 진행횟수 163건, 연인원 1,781명) - 취약계층 아동정서지원프로그램’꿈아트’(지원금 15,000천원, 진행횟수 37건, 연인원 435명) - 청소년중독예방사업 ‘지피지기’ (지원금 30,000천원, 진행횟수 10건, 연인원 1,061명) ○직원역량강화사업: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직원연수 등 (진행횟수 157건, 연인원 1,413명)
2025	○사례관리기능 -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등 (진행횟수 2,547건, 연인원 19,808명) - 다시함께하는청년(은둔, 고립) 회복탄력성 증진사업 ‘청수당’ (진행횟수 275건, 연인원 310명) ○서비스제공기능 - 아동인권감수성증진사업, 아동여가문화증진사업, 찾아가는 문화여가프로그램 등 (진행횟수 632건, 연인원 5,111명) - 경제적지원, 식생활지원, 우리동네먹거리네트워크 등 (진행횟수 572건, 연인원 4,909명) - 교육문화사업-영유아 및 성인프로그램 등 (진행횟수 1,030건, 연인원 16,007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주민동아리지원사업, 토요프로그램 등 (진행횟수 290건, 연인원 5,154명) - 후원개발 및 관리 (진행횟수 282건, 연인원 683명) - 자원봉사개발 및 관리 (진행횟수 1,557 건, 연인원 1,752명) - MOU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활동, 실습지도 등(진행횟수 482건, 연인원 1,552명)

	- 아이성장놀이터, 시끌벅적가족도서관 등 (진행횟수 1,192건, 연인원 21,086명) ○공모사업 - 이주배경청소년의 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한 정서적 표현력 강화사업 'step-up' (지원금 10,000천원 진행횟수 94건, 연인원 1,446명) -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꿈빛 파티시에'(지원금 20,000원, 진행횟수 62건, 연인원 736명) - 청소년중독예방사업 '지피지기' (지원금 30,000천원, 진행횟수 59건, 연인원 533명) - 청소년 건강식 지원사업 '푸드트립' (지원금 37,470천원, 진행횟수 421건, 연인원 2,373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강화사업 '품패밀리' (지원금 115,000천원, 진행횟수 1,569건, 연인원 1,626명) - 느린학습청소년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초록아미학교' (44,037천원, 진행횟수 96건, 연인원 573명) ○직원역량강화사업: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직원연수 등 (진행횟수 307건, 연인원 1,639명)
2026	○사례관리기능 -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 연계 등 (진행횟수 1,056건, 연인원 6,767명) ○서비스제공기능 - 이주배경성인한국어교육사업, 중장년1인가구가조모임 등 (진행횟수 74건, 연인원 701명) - 경제적지원, 식생활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진행횟수 129건, 연인원 2,410명) - 교육문화사업-영유아 및 성인, 성인문해교육 등 (진행횟수 598건, 연인원 10,106명)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 찾아가는문화예술학교, 마을강사 양성사업, 주민동아리지원사업, 토요프로그램 등 (225 건, 1,322명) - 후원개발 및 관리 (106건, 328명) - 자원봉사개발 및 관리 (진행횟수 496건, 연인원 501명) - MOU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활동, 실습지도 등(진행횟수 158건, 연인원 300명) - 주민만나기, 지역현안TFT (164회/322명) - 아이성장놀이터, 소통의숲, 오픈갤러리 등 (진행횟수 389건, 연인원 9,576명) - 도란도란건강상담소 (진행횟수 24건, 연인원 22명) ○공모사업 - 취약계층아동·청소년가족기능강화사업'품패밀리'(지원금 131,000천원 진행횟수 324건, 연인원 330명) - 느린학습청소년성장지원사업'초록아미학교'(지원금 천원 진행횟수 67건, 연인원 207명) - 이주배경청소년학습사회적응지원사업'새싹아람학교'(지원금 65,485천원 진행횟수 78건, 연인원 423명) - 청소년중독예방사업'지피지기-러닝크루'(지원금 30,000천원 19건, 128명) - 삼성꿈장학재단배움터교육지원사업 '건강드림 디저트연구소' (지원금 20,000천원 진행횟수 14건, 연인원 158명) ○직원역량강화사업: 직원교육 및 슈퍼비전, 직원연수 등 (진행횟수 123건, 연인원 437명) ○찾아가는 효드림밥상, 인지정서통합활성화프로그램 등(진행횟수 34건, 연인원 759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606,405	1,478,014	-	128,391	
2025	1,676,268	1,637,564	-	38,704	
2026	1,581,817	854,585	-	727,232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혜란	전화	2619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792명(시군지원시설 782명, 도직접지원시설 10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40,432	44,352	27,664	13,776	0	2,912	3,920	
국비		0					0	
도비	20,496	22,456	14,112	6,888		1,456	1,960	도50%
시비	19,936	21,896	13,552	6,888		1,456	1,960	시5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 시군지원시설(도비50%, 시비50%) : 경정(56,000원*792명) - 기정(56,000원*740명)	= 2,912	

□ 예산요구 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정책과-7572(2026.4.8.)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부족분 증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대상자 52명 증가(740명 → 792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자 파악
- 2026. 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자 최종명단 통보(경기도 → 시)
- 2026. 4. ~ 2026. 1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총 554명 지원
202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총 630명 지원
202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총 203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8,080	31,024	-	7,056	
2025	40,432	35,280	-	5,152	
2026	41,440	11,368	-	30,072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복지7급 정아리	전화	2616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2,542명(시군지원시설 2,531명 / 도직접지원시설 11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8호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8.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2,190	25,420	14,510	8,120	0	2,790	3,230	
국비		0					0	
도비	11,150	12,765	7,310	4,055		1,400	1,615	도50%
시비	11,040	12,655	7,200	4,065		1,390	1,615	시5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9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시군지원시설(도비50%, 시비50%) : 경정(10,000원*2,542명) - 기정(10,000원*2,263명)	= 2,79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정책과-7572(2026.4.8.)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부족분 증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대상자 279명 증가(2,263명 → 2,542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상해보험 지원 대상자 파악
- 2026. 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안내(경기도 → 시)
- 2026. 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급
- 2026. 9.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2차 지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총1,815명 지원
2025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총 2,219명 지원
202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2,263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8,910	18,150	-	760	
2025	22,190	22,190	-	-	
2026	22,630	22,630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복지7급 정아리	전화	2616
-----	-------	------------	-----	----------	----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 종사자 17명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사업목적	장기근속비 지급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850	0	0	0	850	850	
국비		0					0	
도비		850				850	850	도비1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5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 50,000원*17명*1회 =	850	

□ 예산요구 사유

- 장기근속비 지급을 통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증진
(종합사회복지관 15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명, 사회복지협의회 1명)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정책과-10998(2026.06.01.)호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정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6. : 신규사업 및 확정내시 통보
 - 2026. 09. :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성현우	전화	2620
-----	-------	------------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박남순
사업목적	사회보장영역 연계·협력을 통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계(연계)반복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통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57,884	172,630	171,394	0	0	1,236	14,746	
시비	157,884	172,630	171,394			1,236	14,746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236	1,236	0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172,630,000원) - 기정(171,394,000원) - 급여(사무국장, 팀장) : 936,000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사무용품 : 300,000원 =	1,236	1,236	0	

□ 예산요구 사유

-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보전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인상률 3.0% 반영에 따른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 3.5%와의 차액 발생, 급여·제수당 및 퇴직적립금 부족분 반영
- 제6기(2027~2030) 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편성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4년도 연차별시행계획 결과평가 및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2025	○ 2025년도 연차별시행계획 결과평가 및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2026	○ 제6기 김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 2026년도 연차별시행계획 결과평가 및 202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4	150,516	150,516	-	141,854	141,854	-	8,662	8,662	-	
2025	157,884	157,884	-	157,291	157,291	-	593	593	-	
2026	171,394	171,394	-	100,226	100,226	-	71,168	71,168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홍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성현우	전화	2620
-----	-------	------------	-----	------------	----	------

호국보훈 행사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보훈행사 4회(신년 현충탑 참배, 현충일, 6.25전쟁 행사 등)		
사업목적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공로 홍보 및 유가족 위로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보훈 기본법	제2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실시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 행사개최 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9,000	31,652	29,150	0	0	2,502	-7,34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9,000	31,652	29,150			2,502	-7,34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2	
호국보훈 행사운영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보훈시설 개보수 준공식 급식비 : 9,000원*278명 =	2,502	

□ 예산요구 사유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행사 참석자 급식비

□ 예산증감 사유

-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개보수 준공식 행사로 급식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신년 현충탑 참배
 - 2026. 06. : 현충일, 6.25 행사 실시 등
 - 2026. 09. : 보훈시설 개보수 준공식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신년 현충탑 참배(100명), 현충일 추념식(400명), 6.25전쟁 74주년 행사(170명)
2025	· 신년 현충탑 참배(70명), 현충일 추념식(520명), 6.25전쟁 75주년 행사(170명), ·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식, 김포시 보훈회관 개관식 개최
2026	· 신년 현충탑 참배(100명), 현충일 추념식(600명), 6.25전쟁 75주년 행사(15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9,000	18,070	-	930	
2025	39,000	36,612	-	2,388	
2026	29,150	28,935	-	215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철훈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7 2618
-----	-------	----------	-----	------------------------	----	--------------

참전명예수당(도비)(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549명(1인당 800천원, 연 1회 지급)		
사업목적	경기도 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사기 진작 및 경제적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보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004,200	1,239,200	1,095,120	121,680	0	22,400	235,000	
국비		0					0	
도비	1,004,200	1,239,200	1,095,120	121,680		22,400	235,000	도1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400	
참전명예수당 (도비)	301-14 기타보상금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 경정(800,000원*1,549명) - 기정(800,000원*1,521명)	= 22,400	

□ 예산요구 사유

-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한 명예 선양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의 부족분 추가 편성
- 참전명예수당(도비) 변경내시 : 경기도 복지정책과-10478(2026.05.2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5.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통보(경기도 → 시)
- 2026. 06. : 참전명예수당 1차 지급(5.15. 기준 생존 참전유공자)
- 2026. 10. : 참전명예수당 2차 지급(사망한 참전유공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지급인원 : 1,771명(생존자 1,732명, 사망자 39명) · 지 급 액 : 400천원/1인 ※ '24. 1월 ~ 3월 중 사망자에게 1인당 100천원, 4월 ~ 6월 중 사망자에게 1인당 200천원 지급
2025	· 지급인원 : 1,693명(생존자 1,653명, 사망자 40명) · 지 급 액 : 600천원/1인 ※ '25 5.15.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 생존월수 x 50천원 지급
2026	· 지급인원 : 1,529명(생존자) · 지 급 액 : 800천원/1인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13,200	698,100	-	15,100	
2025	1,004,200	999,900	-	4,300	
2026	1,239,200	1,223,200	-	16,0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8
-----	-------	----------	-----	----------	----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1개소		
사업목적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을 통한 독립운동정신 계승 및 애국심 고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4조(업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보존 및 관리 2. 유물의 보관 관리 및 수집 3. 이용자 보호 및 홍보 활동 4. 김포시 3·1 만세운동과 관련한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기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공익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20,768	334,972	352,549	0	0	-17,577	14,20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20,768	334,972	352,549			-17,577	14,20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577	
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독립운동기념관 경비(위탁관리비) : 경정(115,829,000원) - 기정(133,406,000원)	= -17,577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독립운동기념관 위탁관리비 계약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전기안전관리비 및 소방안전관리비 등 위탁관리비 계약 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예산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교부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연간 이용객 39,980명/18개 사업) - 3.1절특별기획전 <고종황제의 국장>, 광복절특별기획전 <1920 독립전쟁의 해> 기획 및 운영 - 국경일행사(3.1절 및 광복절) 및 청소년큐레이터, 역사강좌 등 특성화사업(6종) 추진 - <김포군 대곶면 영수증> 등 179점 발굴, <독립선언서> 영인본 1점 구입
2025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연간 이용객 40,010명/16개 사업) - 광복절특별기획전 <식민지 조선의 풍경> 운영 - 국경일행사(3.1절 및 광복절) 및 쏘쏘우리마을독립운동, 청소년큐레이터 등 특성화사업(5종) 추진 - <조선의 아침>, <태극보통우표> 등 14점 구입, <김아파나시 훈장>, <김아파나시 레닌훈장> 등 34점 기증
2026	·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연간 이용객 13,741명/17개 사업) - 국경일행사(3.1절) 및 쏘쏘우리마을독립운동, 순회전시 등 특성화사업(5종) 추진 - 소장품 공개구입을 통한 소장품 발굴 추진(現 구입 예정 자료 화상공개 추진 중) - 메타버스가상전시관 운영 및 수장고 IPM방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95,225	263,368	-	31,857	
2025	320,768	299,804	-	20,964	
2026	352,549	156,394	-	196,155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보훈팀장 박성식	담당자	보건9급 안보림	전화	2618
-----	-------	----------	-----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04명		
사업목적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3조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0,000	60,000	60,000	0	0	0	0	
국비	15,000	30,000	30,000			0	15,000	국50%
도비	9,000	18,000	18,000			0	9,000	도30%
시비	6,000	12,000	12,000			0	6,000	시2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201-02 공공운영비	· AI 안부든든 서비스 경정(8,250원*170명)-기정(8,250원*110명)	≒ 1,4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생활 개선 지원 경정(500,000원*34명)-기정(500,000원*37명)	≒ -1,400	

□ 예산요구 사유

- AI 안부든든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영비 수요 확대

□ 예산증감 사유

- AI 안부든든 서비스 지원대상자 60명 증가에 따른 통계목간 예산 조정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AI 안부 든든 서비스 이용 : 71명 · 고독사 예방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 생활 개선 지원 8명(주거환경 개선 4명, 심리지원 4명)
2025	· AI 안부 든든 서비스 이용 : 97명 · 고독사 예방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 생활 개선 지원 45명(주거환경 개선 3명, 심리지원 12명, 식품 꾸러미 지원 30명)
2026	· AI 안부 든든 서비스 이용 : 116명 · 고독사 예방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 안부살핌 물품서비스 33명, 주거환경 및 심리지원 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0,000	14,805	-	5,195	
2025	30,000	29,276	-	724	
2026	60,000	28,892		31,108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공석)	담당자	복지7급 윤진	전화	2635
-----	-------	------------	-----	---------	----	------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116가구		
사업목적	실직, 중한질병 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5,699,958	6,164,200	6,050,000	0	0	114,200	464,242	
국비	4,559,966	4,931,360	4,840,000			91,360	371,394	국80%
도비	569,996	616,420	605,000			11,420	46,424	도10%
시비	569,996	616,420	605,000			11,420	46,424	시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4,200	
긴급복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긴급복지 : 경정(1,205,000원*5,116가구) - 기정(1,205,000원*5,021가구)	= 114,200	

□ 예산요구 사유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해소 및 빈곤층 전락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사업과-9445(2026. 4. 15.)호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지원대상자 95가구 증가(5,021가구 → 5,116가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수시: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지급, 사후조사
 - 동절기 (10월 ~3월): 연료비 추가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5,213가구, 5,023,466천원)
2025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6,461가구, 5,699,958천원)
2026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4,029가구, 3,932,73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023,469	5,023,466	-	3	
2025	5,699,958	5,699,958	-	-	
2026	6,050,000	3,932,733	-	2,117,267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긴급복지팀장 전진선	담당자	행정6급 전해진	전화	2652
-----	-------	------------	-----	----------	----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68가구		
사업목적	실직, 폐업, 중한질병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완화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1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상 및 지원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318,333	925,090	725,083	0	0	200,007	-393,243	
국비		0					0	
도비	395,500	277,527	217,525			60,002	-117,973	도30%
시비	922,833	647,563	507,558			140,005	-275,270	시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7	
경기도형 긴급복지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 경정(1,205,000원 * 768가구) - 기정(1,205,000원 * 602가구) =	200,007	

□ 예산요구 사유

- 법·제도 기준 초과 등으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해소 및 빈곤층 전략 방지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 내시된 도비 보조사업의 부족분 추가 편성
- 경기도형 긴급복지 변경내시 : 경기도 복지사업과-11130(2026. 5. 1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수시 :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지급, 사후조사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추가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975가구, 1,065,957천원)
2025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1,215가구, 1,316,572천원)
2026	·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 (총 460가구, 448,42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166,205	1,065,957	-	100,248	
2025	1,318,333	1,316,572	-	1,829	
2026	725,083	448,423	-	276,66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긴급복지팀장 전진선	담당자	사회복지8급 최유경	전화	2489
-----	-------	------------	-----	------------	----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제공기관 5개소 / 대상자 59명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85,714	200,000	170,000	0	0	30,000	14,286	
국비	130,000	140,000	119,000			21,000	10,000	70%
도비	27,857	30,000	25,500			4,500	2,143	15%
시비	27,857	30,000	25,500			4,500	2,143	1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경정(560,000원*59명*6개월)-기정(560,000원*50명*6개월)	30,000	

□ 예산요구 사유

- 하반기 신규 및 재판정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정책과-10382(2026.5.19.)호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액
- 하반기 사업 지원 대상자(신규 및 재판정) 9명 증가(50명→59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정산
- 2026. 01. :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시 모집(연중) 및 서비스 개시
- 2026. 08.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
- 2026. 12. :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분기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사업홍보 및 홍보리플릿 제작: 7,000천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집행: 3회 / 49,732천원 ·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결정: 43건
2025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집행: 9회 / 177,002천원 ·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결정: 63건
202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지급: 6회 / 152,460천원 · 일상돌봄서비스 제공 결정: 4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1,428	49,732	-	11,696	
2025	185,714	177,002	-	8,712	
2026	170,000	152,460	-	17,54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 김경인	담당자	행정8급 여다빈	전화	2656
-----	-------	------------	-----	----------	----	------

누구나 돌봄 사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우중로 1
사업규모	제공기관 5개소 / 대상자 203명		
사업목적	돌봄 욕구가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른 삶의 기회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90,000	149,000	149,000	0	0	0	-41,000	
국비		0					0	
도비	95,000	74,500	74,500				-20,500	50%
시비	95,000	74,500	74,500				-20,500	5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누구나 돌봄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품 제작, 사업 홍보비 : 경정(6,000,000원*1식)-기정(16,000,000원*1식)	=	-10,000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서비스 제공 사업비 : 경정(560,000원*203명)-기정(560,000원*185명)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25년 사업 초기 홍보 집중기에서 26년 사업 안정화 단계에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홍보물품 제작 등의 예산항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직접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재편성하여 내실 있는 사업 운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사무관리비(10,000천원)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대상자 지원 확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 2026년 누구나 돌봄 사업 홍보
- 2026. 01. : 2025년 누구나 돌봄 사업 정산
- 2026. 01. : 누구나 돌봄 사업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개시
- 2026. 02. : 읍면동 누구나 돌봄 사업 담당자 교육
- 2026. 03. : 누구나 돌봄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 09. : 누구나 돌봄 사업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누구나 돌봄 사업비 집행: 124,833천원 · 누구나 돌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 57,256천원 · 누구나 돌봄 사업(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일시보호) 대상자 및 서비스 지원: 178명 / 216회
2026	· 누구나 돌봄 사업비 집행: 74,737천원 · 누구나 돌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 18,500천원 · 누구나 돌봄 사업(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일시보호) 대상자 및 서비스 지원: 117명 / 147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190,000	182,088	-	7,912	
2026	149,000	93,237	-	55,76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장 김경인	담당자	행정8급 여다빈	전화	2656
-----	-------	------------	-----	----------	----	------

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통합사례관리사 3명		
사업목적	통합사례관리사 수당지원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2항, 제4항
		②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법 제42조의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5,894	38,163	38,163	0	0	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894	38,163	38,163				32,26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 인건비 : 666,660원*3명*3월	≒ 6,000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4대보험료 부담금 : 경정(162,830원*3명*12월) - 기정(329,490원*3명*12월)	≒ -6,000	

□ 예산요구 사유

- 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과의 목간 조정

□ 예산증감 사유

- 세부사업내 예산 조정으로 예산액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통합사례관리사 3명 수당 지원
2025	· 통합사례관리사 3명 수당 지원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5,823	15,395	-	428	
2025	5,894	5,892	-	2	
2026	38,163	-	-	38,16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7급 이윤희	전화	2632
-----	-------	------------	-----	----------	----	------

인력운영비(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민간사례관리사 4명		
사업목적	민간사례관리 전문가를 통해 복합적 욕구와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조례 제4조, 제5조 제4조(기능) 도 무한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73,846	280,137	213,103	67,034	0	0	6,291	
국비		0					0	
도비	82,154	84,041	63,931	20,110			1,887	도30%
시비	191,692	196,096	149,172	46,924			4,404	시7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인건비 등 : 경정 (254,537,000원) - 기정(246,573,000원) =	8,000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 4대보험료 부담금 : 경정(25,600,000원) - 기정(33,600,000원) =	-8,000	

□ 예산요구 사유

- 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과의 목간 조정

□ 예산증감 사유

- 세부사업내 예산 조정으로 예산액 동일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월 :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민간사례관리사 4명 인건비 지급
2025	· 민간사례관리사 4명 인건비 지급
2026	· 민간사례관리사 4명 인건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55,777	247,602	-	8,175	
2025	273,846	262,311	-	11,535	
2026	280,137	153,847		126,29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복지7급 이윤희	전화	2632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생활보장과
기 정 액	89,131,894천원	요 구 액	8,271,644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0	24,993	0	0	0	24,993	24,993	
임시적세외수입	0	24,993	0	0	0	24,993	24,993	
보조금등반환금 /자체보조금등반환금 ◎2025년도 자산형 성사업 집행잔액	0	24,993	0	0	0	24,993	24,993	· 세입내용 : 2025년 자산형성사업 예탁금 집행 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예탁금 집행잔액 · 증감사유 :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332,717	0	0	0	332,717	332,717	
보전수입등	0	332,717	0	0	0	332,717	332,717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도 자산형 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0	322,009	0	0	0	322,009	322,009	· 세입내용 : 2025년 자산형성사업 예탁금 집행 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예탁금 집행잔액 · 증감사유 :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도 자산형 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0	10,708	0	0	0	10,708	10,708	· 세입내용 : 2025년 자산형성사업 예탁금 집행 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예탁금 집행잔액 · 증감사유 :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
내부거래	0	601	0	0	0	601	601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2024년 경기감포 지역자활센터 불용 매각대금 반납	0	601	0	0	0	601	601	· 세입내용 : 지역자활센터 책상 등 불용물품 매각 대금 발생 · 산출내역 : 601,440원*1회 · 증감사유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입금된 매각 대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생활보장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 서 명	생활보장과
기 정 액	5,048,673천원	요 구 액	601,705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78,501	4,732,332	4,260,332	0	0	472,000	953,831	
보전수입등	44,269	93,093	0	0	0	93,093	48,824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44,269	92,515	0	0	0	92,515	48,246	· 세입내용 : 순세계잉여금 · 산출내역 : 2025년도 시비 사용 잔액 정산진료비, 부당이득 환수금, 기타 이자수입 등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 지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0	492	0	0	0	492	492	· 세입내용 : 2025년도 국비 사용 잔액
전년도이월금 /사도비보조금사용잔액 ◎2025년도 의료급여 사업 지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0	86	0	0	0	86	86	· 세입내용 : 2025년도 시·도비 사용 잔액
내부거래	3,734,232	4,639,239	4,260,332	0	0	378,907	905,007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3,734,232	4,639,239	4,260,332	0	0	378,907	905,007	· 세입내용 : 의료급여 전입금 · 산출내역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9,464명 - 건강생활유지비 7,331명*6,000원*12월 · 증감사유 :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고유가 피해지원금(성립전)

사업기간	2026. 4. 27. ~ 8.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24,575명		
사업목적	중동 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41,736,800	0	0	33,085,144	8,651,656	41,736,800	
국비		33,389,440			26,468,114	6,921,326	33,389,440	80%
도비		4,173,680			3,308,515	865,165	4,173,680	10%
시비		4,173,680			3,308,515	865,165	4,173,680	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651,656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계	= 24,636	
	201-01 사무관리비	· 행정장비 임차료 : 경정(33,440,000원) - 기정(25,000,000원) [모니터, 복합기 등 125대 → 194대] · 선불카드 수수료 등 : 경정(84,756,000원) - 기정(80,000,000원) [김포페이 알람톡 비용 : 4원*1,189,000건] · 홍보비 등 : 경정(20,000,000원) - 기정(8,560,000원) [신청서 서식 등 제작, 공공 게시대 현수막, 배너 등]	= 11,440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 등 : 경정(15,000,000원) - 기정(5,000,000원) [우편발송 요금 : 520원*28,846건]	= 10,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 경정(41,407,400,000원) - 기정(32,790,380,000원) [지급대상자 238,405명 → 324,575명]	= 8,617,020	

□ 예산요구 사유

-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소비 촉진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중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정책과-9881(2026.5.12.)호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 지급대상자의 증가(238,405명 → 324,575명)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정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13.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통보 (도 복지정책과-7878호)
 - 2026. 4. 23 : 1차 성립전 예산 편성
 - 2026. 4. 27. ~ 5. 8.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 2026. 5. 18. ~ 7. 3.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 2026. 6. 9 : 2차 성립전 예산 편성
 - 2026. 9월 :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의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97.67% 신청 (대상자 345,016명/신청 336,975명) 지역사랑상품권(김포페이) 예약금 13,000,000천원, 신용·체크카드 개산급 등 17,743,780천원 등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40,871,635	30,910,642	-	9,960,99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현정	전화	3013
-----	-------	-----------------------	-----	------------	----	------

자활근로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55, 3층
사업규모	171명		
사업목적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2항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155,554	2,477,300	2,347,300	0	0	130,000	321,746	
국비	1,940,000	2,229,568	2,112,570			116,998	289,568	90%
도비	64,666	74,319	70,419			3,900	9,653	3%
시비	150,888	173,413	164,311			9,102	22,525	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0	
자활근로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인건비 및 운영비) - 경정(1,189,826원*163명*12월)-기정(1,419,444원*129명*12월) =	130,000	

□ 예산요구 사유

-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자립 지원 확대
-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을 위한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사업과-17252(2026. 8. 6.)호의 변경내시 반영
- 자활근로 참여자 34명 증가[(기존)137명 → (변경)171명]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 월 : 시 직접수행 자활참여자 인건비 지급
 - 매분기 :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교부
 - 수 시 : 자활근로 참여자 발굴 및 근무지 배치
 - 점 검 : 정기점검 연1회, 필요시 수시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자활근로사업 : 월평균 116명 (시 직접수행 7명, 지역자활센터 109명)
2025	· 자활근로사업 : 월평균 120명 (시 직접수행 8명, 지역자활센터 112명)
2026	· 자활근로사업 : 월평균 152명 (시 직접수행 8명, 지역자활센터 14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884,571	1,848,844	-	35,727	
2025	2,247,555	2,237,400	-	10,155	
2026	2,347,300	1,520,548	-	826,752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세준	전화	2623
-----	-------	------------	-----	------------	----	------

자활근로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55, 3층
사업규모	163명		
사업목적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자립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2항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339,640	0	0	0	339,640	339,6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39,640				339,640	339,6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9,640	
자활근로 지원 (자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인건비 : 416,736원*163명*5월 =	339,64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복지사업과-17252(2026. 8. 6.)호의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발생 예상
- 참여자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생계 곤란 및 다수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시비 편성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중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참여자 163명의 인건비 부족분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교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세준	전화	2623
-----	-------	------------	-----	------------	----	------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55, 3층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활센터 운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74,872	397,475	389,950	0	0	7,525	22,603	
국비	262,411	278,232	272,965			5,267	15,821	70%
도비	33,738	35,773	35,096			677	2,035	9%
시비	78,723	83,470	81,889			1,581	4,747	2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525	
지역자활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및 인건비 : 경정(5,544,920원*1개소*12월)-기정(4,917,840원*1개소*12월) =	7,525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사업과-17025(2026. 8. 4.)호의 변경내시 반영
- 지역자활센터 간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 예산액 반영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매분기 :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검토 및 교부, 정산서 확인
 - 점 검 : 정기 점검 연 1회, 필요시 수시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종사자 인건비(6명) 및 운영비 지원
2025	· 종사자 인건비(6명) 및 운영비 지원
2026	· 종사자 인건비(6명) 및 운영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65,476	365,476	-	-	
2025	374,872	374,872	-	-	
2026	389,950	224,067	-	165,88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세준	전화	2623
-----	-------	------------	-----	------------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55, 3층
사업규모	8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3,800	14,400	14,400	0	0	0	600	
국비		0					0	
도비	4,140	4,320	4,320				180	30%
시비	9,660	10,080	10,080				420	7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특수근무수당: 경정(0원)-기정(150,000원*8명*12월)	= -14,400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특수근무수당: 150,000원*8명*12월	= 14,400	

□ 예산요구 사유

- 종사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통계목 변경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7.: 월별 특수근무수당 지급 완료
 - 2026. 8. ~ 2026. 12.: 월별 특수근무수당 지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정규직 종사자 8명 특수근무수당 지급
2025	· 정규직 종사자 8명 특수근무수당 지급
2026	· 정규직 종사자 8명 특수근무수당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3,200	11,700	-	1,500	
2025	13,800	13,700	-	100	
2026	14,400	8,400	-	6,000	7.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세준	전화	2623
-----	-------	------------	-----	------------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55, 3층
사업규모	11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6,400	6,600	6,600	0	0	0	200	
국비		0					0	
도비	6,400	6,600	6,600				200	1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처우개선비: 경정(0원)-기정(50,000원*11명*12월)	= -6,600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처우개선비: 50,000원*11명*12월	= 6,600	

☐ 예산요구 사유

- 종사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통계목 변경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7.: 월별 처우개선비 지급 완료
 - 2026. 8. ~ 2026. 12.: 월별 처우개선비 지급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정규직 종사자 8명 처우개선비 지급 · 계약직 종사자 1명 처우개선비 지급
2025	· 정규직 종사자 8명 처우개선비 지급 · 계약직 종사자 3명 처우개선비 지급
2026	· 정규직 종사자 8명 처우개선비 지급 · 계약직 종사자 3명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450	5,450	-	-	
2025	6,400	6,400	-	-	
2026	6,600	4,200	-	2,4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세준	전화	2623
-----	-------	------------	-----	------------	----	------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16명, 9회			
사업목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임시숙박 등 구호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49,000	42,000	27,000	0	0	15,000	-7,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9,000	42,000	27,000			15,000	-7,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취약계층 복지증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 경정(2,000,000원*16명)-기정(2,000,000원*10명) =	12,000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 경정(1,000,000원*9회)-기정(1,000,000원*6회) =	3,000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보조사업 추경 편성 지연에 따라 공영장례비 적기 지급을 위한 시비 자체 사업비 증액

□ 예산증감 사유

- 무연고 사망자 증가 예상에 따른 공영장례비용 및 공고료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및 화장비 지원
 - 2026. 1. ~ 2026. 12.: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2026. 1. ~ 2026. 12.: 행려자 및 노숙인 응급조치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무연고 공영장례비 지원 : 10명, 18,200,000원 ·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지급 : 7회, 7,000,000원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의료비 지원 : 10명, 298,360원
2025	· 무연고 공영장례비 지원 : 18명, 35,370,000원 ·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지급 : 7회, 7,000,000원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의료비 지원 : 17명, 739,680원
2026	· 무연고 공영장례비 지원 : 10명, 10,720,000원 ·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지급 : 5회, 5,000,000원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의료비 지원 : 5명, 198,6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9,000	25,498	-	3,502	
2025	49,000	43,109	-	5,891	
2026	27,000	15,919	-	11,081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김소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세준	전화	2623
-----	-------	------------	-----	------------	----	------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3명		
사업목적		질병·빈곤 등 복합적 문제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약물 오남용 등 집중사례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의료급여법		제5조의2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급여 관리사를 둔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6,085	41,309	41,309	0	0	0	5,22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6,085	41,309	41,309			0	5,22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 경정(37,919,000원) - 기정(29,603,000원)	8,316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4대보험료 부담금 : 경정(3,390,000원) - 기정(11,706,000원)	-8,316	

□ 예산요구 사유

- 공무직 근로자(의료급여관리사) 호봉 승급 및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충당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세부사업 내 목간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 없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년 매월 기본급 및 수당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공무원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2025	- 공무원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2026	- 공무원 근로자 3명 인건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8,251	25,452	-	2,799	
2025	36,085	36,027	-	58	
2026	41,309	11,318	-	29,991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의료급여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사회복지8급 장민규	전화	2622
-----	-------	-------------	-----	------------	----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외
사업규모	9,464명		
사업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의료급여법	
		제5조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697,800	908,026	770,043	0	0	137,983	210,226	
국비	558,240	726,421	616,034			110,387	168,181	80%
도비	97,692	127,124	107,806			19,318	29,432	14%
시비	41,868	54,481	46,203			8,278	12,613	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7,983	
의료급여사업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 경정(908,026천원) - 기정(770,043천원) - 요양비 : 200,000원 * 300건 = 60,000 - 장애인보조기기 : 900,000원 * 50건 = 45,000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34,000원 * 160건 = 5,440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13,000원 * 1,600건 = 20,800 -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 20,000원 * 337건 = 6,743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사업과-13157(2026.6.16.)호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가내시
- 2025. 12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2026. 6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변경내시
- 반기별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 분기별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및 본인부담 보상금 등 지급
- 수 시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환급금 등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요양비 : 1,819건 363,328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 157건 130,274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3,977건 174,554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1,606건 18,092천원 · 본인부담 보상금 및 기타 환급금 : 374건 9,758천원
2025	· 요양비 : 2,247건 405,614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 190건 145,984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4,069건 133,387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1,161건 10,652천원 · 임신, 출산 진료비 : 1건 11천원 · 의료급여 보상금 : 1건 1,940천원
2026	· 요양비 : 2,090건 328,390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 150건 115,61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4,174건 137,511천원 ·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 102건 9,96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02,300	696,006	-	6,294	
2025	697,800	697,588	-	212	
2026	770,043	591,481	-	178,562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의료급여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사회복지8급 장민규 사회복지9급 안영채	전화	2622 5293
-----	-------	-------------	-----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관내·외 의료기관	
사업규모		9,464명			
사업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의료급여법			제27조 제1항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684,598	4,576,558	4,205,929	0	0	370,629	891,960	
국비		0					0	80%
도비		0					0	14%
시비	3,684,598	4,576,558	4,205,929			370,629	891,960	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70,629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 경정(4,576,558,000원) - 기정(4,205,929,000원)	= 370,629	

□ 예산요구 사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외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 예탁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복지사업과-13157(2026.6.16.)호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 국·도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예산액	국비	도비	시비	비고
76,275,965	61,020,772	10,678,635	4,576,558	국80% 도14% 시6%

※ 국·도비는 도에서 집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가내시
 - 2025. 12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확정내시
 - 2026. 6월 : 국도비 보조금 부담 변경내시
 - 2026. 1월, 3월, 4월, 7월 예탁금 지급 완료
 - 2026. 11월 진료비 등 예탁금 지급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4회)
2025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5회)
2026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4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482,887	3,482,887	-	-	
2025	3,684,598	3,684,598	-	-	
2026	4,205,929	4,205,929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의료급여팀장 이에스더	담당자	사회복지8급 장민규	전화	2622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노인장애인과
기 정 액	208,701,845천원	요 구 액	27,450,366천원

□ 세입예산 요구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2,073,363	2,063,089	1,544,828	0	0	518,261	-10,274	
경상적세외수입	1,067,825	934,593	870,028	0	0	64,565	-133,232	
/기타이자수입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운용 수익(김포시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2개소)	0	59	0	0	0	59	59	· 세입내용 : 김포시장장애인주 간보호센터 등 2개소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운용수익 · 산출내역 : 59,40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시비 이자 수입(대한노인회)	0	6,750	0	0	0	6,750	6,750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시비 이자(대한노인회) · 산출내역 : 6,750,88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비 이자	0	590	0	0	0	590	590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이자 · 산출내역 : 590,18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시비 이자	0	639	0	0	0	639	639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시비 이자 · 산출내역 : 639,97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최종증 발달장애인활동 서비스(주간그룹 일대일)예약금 이자 반환	0	161	0	0	0	161	161	· 세입내용 : 2025년 최종증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그룹일대일) 예약금 이자 · 산출내역 : 161,19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이자	0	301	0	0	0	301	301	· 세입내용 : 2025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자 · 산출내역 : 301,50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비 이자	0	13	0	0	0	13	13	· 세입내용 : 2025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비 이자 · 산출내역 : 13,35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노 인 맞춤돌봄 서비스 이자	0	1,589	0	0	0	1,589	1,589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자 · 산출내역 : 1,589,63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비 이자	0	2,907	0	0	0	2,907	2,907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비 이자 · 산출내역 : 2,907,38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시비 이자	0	9	0	0	0	9	9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시비 이자 · 산출내역 : 9,60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시비 이자	0	79	0	0	0	79	79	· 세입내용 :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시비 이자 · 산출내역 : 79,500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기타이자수입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탁금 이자	0	43,250	0	0	0	43,250	43,250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탁금 이자 · 산출내역 : 43,250,84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탁금 이자	0	1,735	0	0	0	1,735	1,735	· 세입내용 : 2025년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탁금 이자 · 산출내역 : 1,735,42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이자	0	4,538	0	0	0	4,538	4,538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이자 · 산출내역 : 4,538,900원
	/기타이자수입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이자	0	1,945	0	0	0	1,945	1,945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이자 · 산출내역 : 1,945,240원
임시직세외수입		276,538	453,696	0	0	0	453,696	177,158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 센터 등 2개소)	0	5,097	0	0	0	5,097	5,097	· 세입내용 :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김포시장장애인주간 보호센터 등 2개소) · 산출내역 : 5,097,24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북부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보험료 환급금 (25년)	0	141	0	0	0	141	141	· 세입내용 : 북부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보험료 환급금(2025년) · 산출내역 : 141,45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불용물품(노후 차량) 폐차대금 및 보험료 해지 환급금(밀알꿈씨 등 3개소)	0	6,520	0	0	0	6,520	6,520	· 세입내용 : 불용물품(노후차량) 폐차대금 및 보험료 해지 환급금(밀알꿈씨 등 3개소) · 산출내역 : 6,520,36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공용차량 일괄가입에 따른 보험료 해지 환급금(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 센터 등 2개소)	0	322	0	0	0	322	322	· 세입내용 : 공용차량 일괄가입에 따른 보험료 해지 환급금(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2개소) · 산출내역 : 322,86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5년 노인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대한 노인회)	0	20,994	0	0	0	20,994	20,994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대한노인회) · 산출내역 : 20,994,15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공용차량 일괄가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유류포인트 반납(북부노인 복지관)	0	279	0	0	0	279	279	· 세입내용 : 공용차량 일괄가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유류포인트 반납(북부노인복지관) · 산출내역 : 279,56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회보험료 정산 환급금 (24년,25년)	0	6,274	0	0	0	6,274	6,274	· 세입내용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회보험료 정산 환급금(2024년,2025년) · 산출내역 : 6,274,87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5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집행 잔액	0	2,877	0	0	0	2,877	2,877	· 세입내용 : 2025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행 잔액 · 산출내역 : 2,877,41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5년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잔액	0	50	0	0	0	50	50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잔액 · 산출내역 : 50,800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5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시비 잔액	0	4,142	0	0	0	4,142	4,142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비 잔액 · 산출내역 : 4,142,75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5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비 잔액	0	102,274	0	0	0	102,274	102,274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비 잔액 · 산출내역 : 102,274,97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시비 잔액	0	19,495	0	0	0	19,495	19,495	· 세입내용 :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시비 잔액 · 산출내역 : 19,495,00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5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시비 이자 수입	0	14	0	0	0	14	14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시비 이자 수입 · 산출내역 : 14,510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위탁 업무비 집행 잔액	0	707	0	0	0	707	707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위탁업무비 집행잔액 · 산출내역 : 707,220원
	/위탁비 반환수입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탁금 잔액(시비)	0	281,526	0	0	0	281,526	281,526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탁금 잔액(시비) · 산출내역 : 281,526,120원
	/위탁비 반환수입 ◎2025년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탁금 잔액(시비)	0	2,984	0	0	0	2,984	2,984	· 세입내용 : 2025년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탁금 잔액(시비) · 산출내역 : 2,984,33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9,518	1,401,846	0			1,401,846	692,328	
	보전수입등	709,518	1,401,846	0			1,401,846	692,328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0	288,735	0	0	0	288,735	288,735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288,735,87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국비 이자	0	26	0	0	0	26	26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국비 이자 · 산출내역 : 26,35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노인 일자리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대한노인회)	0	32,455	0	0	0	32,455	32,455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일자리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대한노인회) · 산출내역 : 32,455,86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국비 이자	0	1,756	0	0	0	1,756	1,756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국비 이자 · 산출내역 : 1,756,80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국비 이자	0	1,620	0	0	0	1,620	1,620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비 이자 · 산출내역 : 1,620,10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최종증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집행잔액	0	4,678	0	0	0	4,678	4,678	· 세입내용 : 2025년 최종증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집행잔액 · 산출내역 : 4,678,07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최종증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이자	0	442	0	0	0	442	442	· 세입내용 : 2025년 최종증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이자 · 산출내역 : 442,48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국비 이자	0	43	0	0	0	43	43	· 세입내용 : 2025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국비 이자 · 산출내역 : 43,080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대응 지원 잔액 및 이자	0	4,317	0	0	0	4,317	4,317	· 세입내용 : 2025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응지원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4,317,33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잔액 및 이자	0	3,178	0	0	0	3,178	3,178	· 세입내용 : 2025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3,178,91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국비잔액 및 이자	0	18,546	0	0	0	18,546	18,546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비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18,546,65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잔액 및 이자	0	61	0	0	0	61	61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61,46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약금 잔액 및 이자(국비)	0	891,543	0	0	0	891,543	891,543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약금 잔액 및 이자(국비) · 산출내역 : 891,543,65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활동 보조 가산급여 예약금 잔액 및 이자(국비)	0	12,956	0	0	0	12,956	12,956	· 세입내용 : 2025년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약금 잔액 및 이자(국비) · 산출내역 : 12,956,17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집행잔액 및 이자	0	8,389	0	0	0	8,389	8,389	· 세입내용 :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집행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8,389,07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0	18,561	0	0	0	18,561	18,561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18,561,59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발달장애 학생 방학돌봄 지원 도비 이자	0	1	0	0	0	1	1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장애학생 방학돌봄 지원 도비 이자 · 산출내역 : 1,60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사업비 잔액	0	6,057	0	0	0	6,057	6,057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사업비 잔액 · 산출내역 : 6,057,59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센터지원+처우 개선비	0	1,221	0	0	0	1,221	1,221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지원 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및 이자(센터지원+처우개선비 · 산출내역 : 1,221,65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사업비 발생 이자	0	32	0	0	0	32	32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사업비 발생이자 · 산출내역 : 32,05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비 발생 이자	0	23	0	0	0	23	23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비 발생 이자 · 산출내역 : 23,22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도비 보조금 발생 이자	0	112	0	0	0	112	112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도비 보조금 발생 이자 · 산출내역 : 112,500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대한노인회)	0	4,707	0	0	0	4,707	4,707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대한노인회) · 산출내역 : 4,707,67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도비 이자	0	112	0	0	0	112	112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도비 이자 · 산출내역 : 112,94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폭염대비 경로당(무더위 쉼터) 냉방비 긴급 지원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0	38,808	0	0	0	38,808	38,808	· 세입내용 : 2025년 폭염대비 경로당(무더위쉼터) 냉방비 긴급지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38,808,60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노인복지 신문 보급사업 도비 이자	0	2	0	0	0	2	2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복지신문 보급사업 도비 이자 · 산출내역 : 2,66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0	1,341	0	0	0	1,341	1,341	· 세입내용 : 2025년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1,341,90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시비 이자	0	12	0	0	0	12	12	· 세입내용 : 2025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시비 이자 · 산출내역 : 12,92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사회복지 시설 환경개선 도비 이자	0	40	0	0	0	40	40	· 세입내용 : 2025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도비 이자 · 산출내역 : 40,27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도비 잔액 및 이자	0	1,142	0	0	0	1,142	1,142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비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1,142,25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약금 잔액 및 이자(도비)	0	57,313	0	0	0	57,313	57,313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약금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57,313,46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약금 잔액 및 이자(도비)	0	832	0	0	0	832	832	· 세입내용 : 2025년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약금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832,90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도비 이자 수입	0	6	0	0	0	6	6	· 세입내용 : 2025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도비 이자 · 산출내역 : 6,21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이자	0	1,945	0	0	0	1,945	1,945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이자 · 산출내역 : 1,945,24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이자	0	833	0	0	0	833	833	· 세입내용 :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이자 · 산출내역 : 833,670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2025년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도비 이자	0	1	0	0	0	1	1	· 세입내용 : 2025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도비 이자 · 산출내역 : 1,690원

기초연금 지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약 51,000명		
사업목적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기초연금법		제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상호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74,796,438	188,756,829	158,827,885	0	0	29,928,944	13,960,391	
국비	139,838,350	151,005,463	127,062,308			23,943,155	11,167,113	
도비	6,991,618	7,550,273	6,353,115			1,197,158	558,655	
시비	27,966,470	30,201,093	25,412,462			4,788,631	2,234,623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928,944	
기초연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기초연금 : 경정(188,756,829,000원)-기정(158,827,885,000원) = 29,928,944		

□ 예산요구 사유

- 취약계층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 영위 도모
 - 선정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0천원 이하, 부부가구 월3,952천원 이하
 - 지원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9천원, 부부가구 월 최대 279천원

□ 예산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미편성분 2개월분(11월~12월)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기초연금 지급(매월 25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월평균 45,361명 지원
2025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월평균 47,794명 지원
2026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월평균 51,600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62,991,506	162,595,044	-	396,462	
2025	174,796,438	174,796,438	-	-	
2026	158,827,885	109,467,595	-	49,360,29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은미	전화	2205
-----	--------	------------	-----	------------	----	------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약 4,064명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신체적 청결 유지를 위해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위임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조례	제4조 제1항 제7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 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44,600	720,120	720,120	0	0	108,936	84,45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44,600	829,056	720,120			108,936	84,45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8,936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경정(17,000원*4,064명*12월)-기정(17,000원*3,530명*12월) =	108,936	

□ 예산요구 사유

-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을 위한 시 추가급여

□ 예산증감 사유

- 기초생활수급 신규책정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자 증가(약 3,530명→약 4,064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후생복지비 지급(매월 20일)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매월 3,170명 지원
2025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매월 3,810명 지원
2026	·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매월 3,974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51,600	650,268	-	1,332	
2025	744,600	744,600	-	-	
2026	720,120	489,039	-	231,081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은미	전화	2205
-----	--------	------------	-----	------------	----	------

노인교실 지원(비공모)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노인대학	대표자	신광철
사업목적	취미생활·건강유지·기타 일상생활 관련 학습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욕구 충족		
사업구분	☐ 신규 ☒ 연(연)계반복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탬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88,000	225,681	220,600	0	0	5,081	37,681	
시비	188,000	225,681	220,600			5,081	37,681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5,081	5,081	0	
노인교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강사료(특별 : 경정100,000원*1명*75회)- 가정100,000원*1명*55회) =	2,000	2,000		
		· 노인교실 졸업생 등 체험학습 버스임차료 : 700,000원*3대*1회 =	2,100	2,100		
		· 노인교실 체험학습 급식비 : 9,000원*109명*1회 =	981	981		

□ 예산요구 사유

- 어르신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원으로 학습·여가활동 기회 제공
-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홈커밍데이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버스임차료와 급식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참여도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시니어 워킹'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한 강사료 지원
- 홈커밍데이(졸업생 포함 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버스임차료 및 급식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김포노인대학 1개소, 173,000천원 지원
2025	· 김포노인대학 1개소, 188,000천원 지원
2026	· 김포노인대학 1개소 540명, 220,600천원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4	173,000	173,000	-	173,000	173,000	-	-	-	-	
2025	188,000	188,000	-	188,000	188,000	-	-	-	-	
2026	220,600	220,600	-	220,600	220,600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행정6급 박지희	전화	2204
-----	--------	------------	-----	----------	----	------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경로당 380개소		대표자	각 경로당 회장	
사업목적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แทm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IT취약계층)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4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14,000	0	0	0	114,000	114,000	
시비	0	114,000	0			114,000	114,000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14,000	114,000	0	
경로당 운영지원 (자체)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경로당 부식비 지원 : 100,000원*380개소*3월 =	114,000	114,000		

□ 예산요구 사유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식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로당은 운영비 및 난방비 잔액으로 부식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자체 재원만으로는 식사 제공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경로당이 주 2~3회 식사를 하고 있음
- 부식비 지원을 통해 경로당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 도모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7.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4	-	-	-	-	-	-	-	-	-	
2025	-	-	-	-	-	-	-	-	-	
2026	-	-	-	-	-	-	-	-	-	7.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두리	전화	2249
-----	--------	------------	-----	------------	----	------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경로당 96개소	대표자	각 경로당 회장
사업목적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여가복지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แทm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IT취약계층)		
법 적 근 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7조
	위임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00,000	200,000	180,000	0	0	20,000	0	
시비	200,000	200,000	180,000			20,000	0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20,000	20,000	0	
경로당 환경개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물품 구입 : 경정(1,000,000원*55개소)-기정(1,000,000원*50개소) = · 소규모 환경개선 : 경정(5,000,000원*23개소)-기정(5,000,000원*23개소)	20,000	20,000		

□ 예산요구 사유

- 경로당 시설 및 물품의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추진 필요
 - 물품 지원 : 개소당 1,000천원 이내(가전, 가구, 건강용품 등)
 - 소규모 환경개선 : 개소당 5,000천원 이내(도배, 장판, 보일러, 방수공사 등)

□ 예산증감 사유

- 노후 경로당의 환경개선 지원 확대 필요
 - '26년 상반기 신청 114건 중 88개소만 지원 확정되어 신청 대비 77%만 지원
 - 경로당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환경개선 수요 증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7.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경로당 42개소 지원(물품지원 20개소, 시설보수 22개소)
2025	· 경로당 95개소 지원(물품지원 55개소, 시설보수 40개소)
2026	· 경로당 88개소 지원(물품지원 54개소, 시설보수 34개소)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4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	-	-	-	
2025	200,000	200,000	-	199,892	199,892	-	108	108	-	
2026	180,000	180,000	-	179,570	179,570	-	430	430	-	7.31.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두리	전화	2249
-----	--------	------------	-----	------------	----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83명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의료수가를 지원(대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1,360,924	13,363,266	12,987,701	0	0	375,565	2,002,342	
국비	0	0					0	
도비	1,136,092	1,336,327	1,298,770			37,557	200,235	
시비	10,224,832	12,026,939	11,688,931			338,008	1,802,10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75,565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재가급여 : 경정(1,422,229원*783명*12월)-기정(1,422,219원*761명*12월)	= 375,565	

□ 예산요구 사유

-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자택에 거주하는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변경내시 : 경기도 노인복지과-8021(2026. 3. 24.)호
- 재가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도비 변경 내시 반영(761명 → 783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사업비 집행(분기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월평균 576명. 총 9,421,229천원
2025	· 월평균 683명. 총 11,360,924천원
2026	· 월평균 761명. 총 10,001,42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9,421,229	9,421,229	-	-	
2025	11,360,924	11,360,924	-	-	
2026	12,987,701	10,001,428	-	2,986,27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담당자	행정9급 김연정	전화	2228
-----	--------	------------	-----	----------	----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96명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들의 의료수가를 지원(대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4,594,664	19,279,140	18,786,796	0	0	492,344	4,684,476	
국비	0	0					0	
도비	7,297,332	9,639,570	9,393,398			246,172	2,342,238	
시비	7,297,332	9,639,570	9,393,398			246,172	2,342,23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2,334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시설급여 : 경정(2,695,629원*596명*12월)-기정(2,694,606원*581명*12월)	= 492,334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노인요양시설 입소중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 의료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지원(본인부담금 0%)
 - 국가유공자 등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92%지원(본인부담금 8%)

□ 예산증감 사유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변경내시 : 경기도 노인복지과-8021(2026. 3. 24.)호
- 시설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 반영(581명 → 596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사업비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월평균 328명. 총 10,338,510천원
2025	· 월평균 452명. 총 14,594,664천원
2026	· 월평균 581명. 총 14,471,663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338,510	10,338,510	-	-	
2025	14,594,664	14,594,664	-	-	
2026	18,786,796	14,471,663	-	4,315,13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담당자	행정9급 김연정	전화	2228
-----	--------	------------	-----	----------	----	------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계속비사업-

사업기간	2018. 8. 29. ~ 2029.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1(장기동)
사업규모	지하2층 ~ 지상3층(연면적 : 16,638㎡, 건축면적 : 3,683㎡)		
사업목적	- 신도시 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 지원 -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적기에 통과함으로써,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제3호, 제4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30,000	1,481,980	1,452,000	0	0	29,980	1,351,98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0,000	1,481,980	1,452,000			29,980	1,351,9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980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 복지관 건립	207-01 연구용역비	· 중앙투자심사 대응 용역 : 29,980,000원*1식 =	29,980	

□ 예산요구 사유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재원계획 변경(지방채 발행)의 사유로 재심사 필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지연(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본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의 사유로 재심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중앙투자심사 대응 용역 실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반영	-	-	-	-
일자	2025. 11.	2022. 8.	-	-	-	-	2022. 8.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08. ~ 2018. 11. : 사업계획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 05. ~ 2019. 12. : 타당성조사 사전 용역 준공
- 2020. 10. ~ 2022. 0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타당성조사 완료
- 2022. 08.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심사) 완료
- 2022. 09. ~ 2022. 10. : 공유재산심의회 취득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26. 01. : 중앙투자심사 의뢰(행정안전부)
- 2026. 04. :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행정안전부)
- 2026. 06.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완료
- 2026. 07. : 건축기획용역 완료
- 2026. 08. ~ 2026. 10. : 설계공모 및 설계사 선정
- 2026.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7. 01. ~ 2027. 04. :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완료
- 2027.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27. 11. ~ 2029. 12. : 착공 및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6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D)	3회추경 (F)	
계		64,391,650	13,835,000	1,481,980	1,452,000	0	0	29,980	49,074,670
공 정 별	설계비	1,549,000	130,000	1,419,000	1,419,000			0	
	보상비	13,705,000	13,705,000					0	
	공사비	41,243,000						41,243,000	
	감리비	3,079,000						3,079,000	
	부대비	4,815,650		62,980	33,000			29,980	4,752,67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축기획용역 착수
2026	·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축기획용역 선급금 50% 지급(56,76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130,000	-	130,000	-	계속비
2026	1,582,000	113,523	-	1,468,477	7.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노인장애인과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 16,638㎡, 건축면적 : 3,683㎡)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9,980
부기명 (세부사업)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위치	김포한강3로 291(장기동 1888-18)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담당자	시설8급 이윤재	전화	2215
-----	--------	------------	-----	----------	----	------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09명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의 복지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5,450	0	0	0	15,450	15,450	
국비		0				0	0	
도비		15,450				15,450	15,450	
시비		0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450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장기근속비 : 50,000원*309명*1회 =	15,450	

□ 예산요구 사유

-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장기근속비 지원(연1회)
- 총309명 : 노인복지관 17명, 노인일자리 2명, 장기요양기관 290명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 확정내시 : 경기도 노인복지과-14405(2026. 6. 17.)호
-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한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6. 17. : 경기도 확정내시
 - 2026. 9. : 수당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담당자	행정9급 김연정	전화	2228
-----	--------	------------	-----	----------	----	------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400명		
사업목적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군구 소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화장시설 이용료의 일부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50만 원을 화장시설 이용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화장시설 이용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700,000	700,000	600,000	0	0	10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0,000	700,000	600,000			100,00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화장 장려금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화장 장려금 : 경정(500,000원*1,400명)-기정(500,000원*1,200명) =	100,000	

□ 예산요구 사유

- 높은 사용료를 내고 타 시군구 소재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50만원의 범위에서 화장 비용 실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신청자 수 대폭 증가(102명)로 하반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4.10.31. : 김포시 확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2015. 1. 1. 시행)
- 2018.01.01. : 김포시 확장장려금 지급 시행
- 2022.02.11. : 김포시 확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지원대상자 확대)
- 2026.01.~2026.12. : 2026년도 확장장려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예산액 : 770,000천원, 신청건수 : 1,558명, 집행액 : 769,862천원, 집행률 : 99%
2025	· 예산액 : 700,000천원, 신청건수 : 1,416명, 집행액 : 699,080천원, 집행률 : 99%
2026	· 예산액 : 600,000천원, 신청건수 : 901명, 집행액 : 442,550천원, 집행률 : 79.4%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70,000	769,862	-	138	
2025	700,000	699,080	-	920	
2026	600,000	442,550	-	157,45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장 석낙완	담당자	행정8급 최유진	전화	5563
-----	--------	------------	-----	----------	----	------

장애인단체사무실 별관 리모델링

사업기간	2026. 10.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1(걸포동)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22,000	0	0	0	22,000	2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000				22,000	22,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장애인단체 지원	401-01 시설비	. 가설 및 철거공사 : 2,971,000원 . 도장 공사 : 7,128,000원 . 전기 공사 : 528,000원 . 설비 공사 : 341,000원 . 칸막이 공사 : 5,940,000원 . 간판공사, 샷시공사 등 : 3,130,500원 . 공과잡비 : 1,961,500원	= 22,000	

□ 예산요구 사유

- 공유재산인 장애인단체 별관 사무실(舊 도로관리과 청사) 사용허가(2026.06.01.~2031.05.31.)
- 사무공간 조성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심의회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원안가결	-	-	-	-
일자	2025.11.	-	-	-	-	-	2026.4.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4.29. :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2026.06.01.~2031.05.31.)
 - 2026.10. : 사무실 리모델링 추진
 - 2026.11. :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이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희정	전화	2629
-----	--------	-------------	-----	------------	----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우편배송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월 545건		
사업목적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수수료 및 배송서비스를 지원하여 쉽고 빠른 민원 행정 및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9호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1,600	27,360	18,360	0	0	9,000	5,7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1,600	27,360	18,360			9,000	5,7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우편배송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 경정(8,500원*75건*12월)-기정(4,500원*180건*12월) = -2,070 · IC장애인등록증 : 4,500원*125건*12월 = 6,750 · 우편배송비 : 경정(4,000원*270건*12월)-기정(4,000원*180건*12월) = 4,320		

□ 예산요구 사유

- IC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발급 및 재발급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
- 장애인등록증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수령하도록 우편요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발급 비용 중 지자체 부담금(건당 4,500원) 추가 발생 및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소요액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발급 수수료 및 배송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발급수수료 월 평균 87건 · 우편배송비 월 평균 252건
2025	· 발급수수료 월 평균 100건 · 우편배송비 월 평균 271건
2026	· 발급수수료 월 평균 259건 · 우편배송비 월 평균 26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1,600	15,739	-	5,861	
2025	21,600	17,214	-	4,386	
2026	18,360	12,869	-	5,491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행정9급 오진교	전화	2217
-----	--------	-------------	-----	----------	----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42명(동료지원가 2명, 참여자 40명)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참여활성화 추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56조 제1항,2항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12조 제1항
		도지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3,960	34,960	33,960	0	0	1,000	1,000	
국비	13,584	13,980	13,580			400	396	
도비	3,057	3,150	3,060			90	93	
시비	17,319	17,830	17,320			510	51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기본운영비 : 경정(1,000,000원*2명*12월)-기정(940,000원*2명*12월) =	1,000	

□ 예산요구 사유

- 동료상담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활동 참여 촉진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변경내시 :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9121(2026. 7. 10.)호
- 동료상담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 상승(94만원→100만원)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위탁 체결
 - 2026. 01. ~ 2026. 12. : 사업수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7.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동료지원가 2명, 참여자 19명
2025	· 동료지원가 2명, 참여자 17명
2026	· 동료지원가 2명, 참여자 1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5,860	13,327	-	12,533	
2025	33,960	33,960	-	-	
2026	33,960	25,470	-	8,49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희정	전화	2629
-----	--------	-------------	-----	------------	----	------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29명		
사업목적	저소득장애인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에 대한 획득 기회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제7호
해당조례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6,620	11,516	0	0	0	11,516	-5,104	
국비	0	0				0	0	
도비	4,986	3,455				3,455	-1,531	
시비	11,634	8,061				8,061	-3,573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516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장애인 복지신문 : 2,514원*229가구*4회*5월 =	11,516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복지정보 제공 및 기회 접근성 확대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 도비 확정내시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2525(2026. 5. 12.)호
- 도 사업 일몰 후 재추진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7. : 장애인신문사 선정 및 대상자 확정
 - 2026. 08. ~ 12. :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4개 신문사 주간지, 연 355가구 구독
2025	· 5개 신문사 주간지, 연 297가구 구독
2026	· 4개 신문사 주간지, 연 142가구 구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9,170	6,341	-	2,040	
2025	16,620	15,294	-	1,326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9급 최보람	전화	2211
-----	--------	-------------	-----	------------	----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27가구		
사업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증장애인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동·하절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55,147	201,755	157,137	34,438	0	10,180	-53,392	
국비		0					0	
도비	76,544	60,526	47,141	10,331		3,054	-16,018	
시비	178,603	141,229	109,996	24,107		7,126	-37,37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180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냉난방비 : 경정(46,250원*727가구*6월)-기정(46,250원*690가구*6월) =	10,180	

□ 예산요구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변경내시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1832(2026.4.30.)호
- 중증장애인 대상자 가구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 반영 (690가구→727가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3. : 동절기 난방비 지급(1가구당 5만원)
- 2026. 07. ~ 2026. 09. : 하절기 냉방비 지급(1가구당 4만원)
- 2026. 11. ~ 2026. 12. : 동절기 난방비 지급(1가구당 5만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냉난방비 지원 대상 월평균 638가구 지급
2025	· 냉난방비 지원 대상 월평균 699가구 지급
2026	· 냉난방비 지원 대상 월평균 712가구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40,000	236,870	-	3,130	
2025	255,147	254,500	-	647	
2026	191,575	135,470	-	56,105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화연	전화	2213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75명		
사업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지자체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돌봄 공백 발생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851,304	4,450,126	3,484,334	348,217	0	617,575	598,82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851,304	4,450,126	3,484,334	348,217		617,575	598,82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17,575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자체)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시 추가지원 : 경정(17,270원*775명*20시간*12월)-기정(17,270원*626명*20시간*12월) =	617,575	

□ 예산요구 사유

-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는 장애인에게 시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모든 대상자에게 월 20시간 및 독거장애인 월 330시간 시 추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활동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 반영 (626명→ 775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김포시 24시간 지원 : 19명 · 김포시 추가지원인원 : 613명
2025	· 김포시 24시간 지원 : 18명 · 김포시 추가지원인원 : 667명
2026	· 김포시 24시간 지원 : 18명 · 김포시 추가지원인원 : 72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660,568	3,660,568	-	-	
2025	3,851,304	3,851,304	-	-	
2026	3,832,551	3,832,551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9급 최보람	전화	2211
-----	--------	-------------	-----	------------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9명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의 가족 기능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6,198	55,098	34,458	0	0	20,640	18,900	
국비	25,339	38,568	24,120			14,448	13,229	
도비	1,629	2,480	1,551			929	851	
시비	9,230	14,050	8,787			5,263	4,82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64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바우처 지원 : 경정((160,000원*18명*12월)+(160,000원*21명*6월)) - 기정(160,000원*18명*12월)	≒ 20,640	

□ 예산요구 사유

- 심리적 소진, 우울감, 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1년간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변경내시 :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7736(2026.6.12.)호
- 부모상담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 반영 (18명→39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부모상담서비스 이용대상자 수시 모집 및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 예탁
- 2026. 03. : 2026년 부모상담서비스 1차 대상자 이용 개시
- 2026. 07. : 2026년 부모상담서비스 2차 대상자 이용 개시
- 2026. 08. :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액 : 13,393천원 · 이용자 8명에게 서비스 제공
2025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액 : 36,198천원 · 이용자 18명에게 서비스 제공
2026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액 : 34,458천원 · 이용자 39명에게 서비스 제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3,393	13,393	-	-	
2025	36,198	36,198	-	-	
2026	34,458	34,458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사회복지7급 최화연	전화	2213
-----	--------	-------------	-----	------------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85명		
사업목적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에게 여가활동 등 돌봄서비스 제공 및 부모에게는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981,944	2,530,881	2,400,487	0	0	130,394	130,394	
국비	1,387,361	1,771,616	1,680,341			91,275	384,255	
도비	89,187	113,890	108,022			5,868	24,703	
시비	505,396	645,375	612,124			33,251	139,97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394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바우처 지원 : 경정(17,270원*285명*66시간*12월*65%(집행계수)) - 기정(17,270원*270명*66시간*12월*65%(집행계수))	≒ 130,394	

□ 예산요구 사유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66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1차 변경 내시 :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6612(2026.5.18.)호
- 지원 대상 사업량(270명 → 285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비 예탁,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진행 현황 모니터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이용자 227명
2025	· 이용자 241명
2026	· 이용자 237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836,930	1,836,930	-	-	
2025	1,981,944	1,981,944	-	-	
2026	2,400,487	1,826,460	-	574,027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이은혜	담당자	행정7급 이하나	전화	5566
-----	--------	-------------	-----	----------	----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보리수마을[승가로 89(풍무동)] 문수마을(월곶면 김포대로 2857-39)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는 단기간 돌봄 부담 경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과 가족지원체계 기능 회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765,920	773,179	448,790	140,730	0	183,659	7,259	
국비		0					0	
도비	76,592	58,952	44,705	14,247		0	-17,640	
시비	689,328	714,227	404,085	126,483		183,659	24,89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3,659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경정(32,215,790원*2개소*12월)-기정(32,751,110원*2개소*9월) =	183,659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 참여, 장애인 보호자에게 휴식 제공을 위한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부족분(3개월분, 시비부담금)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 단기거주시설 : 2개소 (보리수마을, 문수마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	-	-	-	-	-	-	2025.10. 보리수마을 2022.11. 문수마을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개소, 종사자 11명 지원(702,694천원)
2025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개소, 종사자 11명 지원(710,110천원)
2026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개소, 종사자 11명 지원(536,70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49,420	702,694	-	46,726	
2025	765,920	710,110	-	55,810	
2026	589,520	536,706	-	52,814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수정	전화	2218
-----	--------	-------------	-----	------------	----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밀알사랑터[북변1로16번길 34(북변동, 산호A)] 행복한사람들[풍년로 19(사우동, 진흥A)]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가정식 주택 내 공동생활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55,200	377,730	217,673	64,867	0	95,190	22,530	
국비		0					0	
도비	35,480	28,254	21,594	6,660			-7,226	
시비	319,720	349,476	196,079	58,207		95,190	29,75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5,19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경정(15,738,750원*2개소*12월)-기정(15,696,660원*2개소*9월) =	95,19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생활 운영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부족분(3개월분, 시비부담금)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 공동생활가정 : 2개소 (밀알사랑터, 행복한 사람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종사자 4명 지원(328,424천원)
2025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종사자 4명 지원(355,150천원)
2026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종사자 4명 지원(254,26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30,900	328,424	-	2,476	
2025	355,200	355,150	-	50,120	
2026	282,540	254,262	-	28,278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수정	전화	2218
-----	--------	-------------	-----	------------	----	------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소망의집(양촌읍 김포한강3로 100·91) 즐거운집(월곶면 점동로96번길 24)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법인이 아닌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전문성 및 서비스 향상 및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66,093	242,007	198,828	28,262	0	14,917	-24,086	
국비		0					0	
도비	79,828	68,127	59,012	9,115			-11,701	
시비	186,265	173,880	139,816	19,147		14,917	-12,38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917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경정(10,083,630원*2개소*12월)-기정(12,616,110원*2개소*9월)	14,917	

□ 예산요구 사유

-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부족분(3개월분, 시비부담금) 및 종사자 인건비 반영
 - 개인운영거주시설 : 2개소 (소망의 집, 즐거운집)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개인운영 거주시설 2개소, 종사자 9명 지원(238,000천원)
2025	· 개인운영 거주시설 2개소, 종사자 9명 지원(245,800천원)
2026	· 개인운영 거주시설 2개소, 종사자 9명 지원(186,3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48,400	238,000	-	10,400	
2025	266,093	245,800	-	20,293	
2026	227,090	186,300	-	40,79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수정	전화	2218
-----	--------	-------------	-----	------------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6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가연마을예지원문수마을율곶면통진프란치스코집통진읍 보리수마을(풍무동)밀알사랑터(북변동)행복한사람들(사우동)
사업규모	7개소		
사업목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790,406	758,203	473,397	133,634	0	151,172	-32,203	
국비		0					0	
도비	79,041	60,703	47,340	13,363			-18,338	
시비	711,365	697,500	426,057	120,271		151,172	-13,86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1,17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6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경정(3,252,790원*7개소*12월)-기정(3,455,360원*7개소*9.5월) =	43,453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보조원 인건비 : 경정(3,860,560원*7명*12월)-기정(4,110,070원*7명*9월) · 운전원 인건비 : 경정(4,455,620원*2명*12월)-기정(4,698,270원*2명*9월) · 간병인비 : 경정(100,000원*9명*25일)-기정(100,000원*1명*25일)	107,719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입소자 복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부족분(3개월분, 시비부담금)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 집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 지원(646,976천원)
2025	·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지원(709,858천원)
2026	· 장애인거주시설 7개소 지원(520,61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77,940	646,976	-	30,964	
2025	790,406	709,858	-	80,548	
2026	607,031	520,617	-	86,414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8급 박수정	전화	2218
-----	--------	-------------	-----	------------	----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2종)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개소			
사업목적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의 차량 운영 등 서비스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56,200	21,600	0	20,870	0	730	-34,600	
국비		0					0	
도비	5,620	2,160		2,087		73	-3,460	
시비	50,580	19,440		18,783		657	-31,14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30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2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차량운영비 : 경정(300,000원*6개소*12월)-기정(289,860원*6개소*12월)	73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차량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사업 변경내시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9516(2026.7.30.)호
- 차량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차량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6개소 지원(27,530천원)
2025	· 차량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7개소 지원(52,330천원)
2026	· 차량운영비 6개소 지원(18,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8,600	27,530	-	1,070	
2025	56,200	52,330	-	3,870	
2026	20,870	18,000	-	2,87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수어통역센터[감암로 125(걸포동)]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청각·언어 장애인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생활과 사회 참여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11,510	336,290	191,580	136,710	0	8,000	24,780	
국비		0					0	
도비	31,151	33,629	19,158	13,671		800	2,478	
시비	280,359	302,661	172,422	123,039		7,200	22,30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	
수어통역센터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경정(28,024,670원*12월)-기정(27,358,000원*12월)	8,000	

□ 예산요구 사유

- 전문적인 수어통역 및 상담·교육을 수행하는 김포시 수어통역센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수어통역센터 운영 변경내시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17280(2026.7.7.)호
-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김포시 수어통역센터 1개소, 종사자 6명 지원(290,459천원)
2025	· 김포시 수어통역센터 1개소, 종사자 6명 지원(280,481천원)
2026	· 김포시 수어통역센터 1개소, 종사자 6명 지원(256,13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99,410	290,459	-	8,951	
2025	311,510	280,481	-	31,029	
2026	328,290	256,130	-	72,16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4.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제2장애인주간보호센터(통진읍 마송1로 150)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장애인 사회재활 증진 및 돌봄 부담 경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5,795	0	10,825	0	4,970	15,79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795		10,825		4,970	15,79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970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자체)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바닥 및 출입구 보완 공사 : 4,970,000원*1식 =	4,970	

□ 예산요구 사유

-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인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이용인의 이동 편의 확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닥·출입구 시설 보완 및 개선 공사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 2026. 12. : 사업 진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김포시제2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10,825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0,825	10,825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권성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정미정	전화	2216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가족문화과



(가족문화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가족문화과
기 정 액	11,583,022천원	요 구 액	697,299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0	138,498	0	0	0	138,498	138,498	
경상적세외수입	0	8,303	0	0	0	8,303	8,303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글로벌 인권 강사 양성 사업 이자수입 반납	0	10	0	0	0	10	10	· 세입내용 : 2025년 글로벌인권강사양성사업 이자수입 · 산출내역 : 이자 10,940원 · 증감사유 : 이자수입 반납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이자수입(시비)	0	4,136	0	0	0	4,136	4,136	· 세입내용 :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자수입 · 산출내역 : 이자 4,136,760원 · 증감사유 : 이자수입 반납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국비) 민간위탁금 시비 이자수입	0	145	0	0	0	145	145	· 세입내용 : 2025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자수입 · 산출내역 : 이자 145,110원 · 증감사유 : 이자수입 반납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가족센터 운영(다문화) 민간 위탁금 시비 이자수입	0	2,148	0	0	0	2,148	2,148	· 세입내용 : 2025년 가족센터 운영(다문화) 이자수입 · 산출내역 : 이자 2,148,370원 · 증감사유 : 이자수입 반납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가족센터 운영(국비) 민간위 탁금 시비 이자수입	0	1,864	0	0	0	1,864	1,864	· 세입내용 : 2025년 가족센터 운영(국비) 이자수입 · 산출내역 : 이자 1,864,440원 · 증감사유 : 이자수입 반납
임시적세외수입	0	120,195	0	0	0	120,195	120,195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시비)	0	6,985	0	0	0	6,985	6,985	· 세입내용 : 2025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산출내역 :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6,985,46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집행잔액(시비)	0	89,102	0	0	0	89,102	89,102	· 세입내용 :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시비 집행잔액 89,102,99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글로벌 인권 강사 양성 사업 집행잔 액 반납	0	446	0	0	0	446	446	· 세입내용 : 2025년 글로벌 인권강사 양성 사업 집행 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시비 집행잔액 446,50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민간위탁금 시비 집행잔액 반납	0	6,954	0	0	0	6,954	6,954	· 세입내용 : 2025년 가족센터 운영(다문화)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시비 집행잔액 6,954,57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가족센터 운영 (국비) 민간위탁금 시비 집행잔액 반납	0	7,672	0	0	0	7,672	7,672	· 세입내용 : 2025년 가족센터 운영(국비)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시비 집행잔액 7,672,92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민간위탁금 시 비 집행잔액 반납	0	9,036	0	0	0	9,036	9,036	· 세입내용 : 2025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시비 집행잔액 9,036,95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지방행정정제재 부과금	16,000	10,000	0	0	0	10,000	-6,000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	16,000	10,000	0	0	0	10,000	-6,000	· 세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금 · 산출내역 : 향후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예상액 반영 · 증감사유 : 전년도 대비 환수대상자 감소 예상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556,888	0	0	0	556,888	556,888	
	보전수입등	0	556,888	0	0	0	556,888	556,888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가정폭력피해 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국비)	0	305	0	0	0	305	305	· 세입내용 : 2025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산출내역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305,06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민간위탁 금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0	11,737	0	0	0	11,737	11,737	· 세입내용 : 2025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산출내역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1,737,29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가족센터 운영 (국비) 민간위탁금 국비 집행잔액	0	9,537	0	0	0	9,537	9,537	· 세입내용 : 2025년 가족센터 운영(국비)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국비 집행잔액 9,537,36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민간위탁금 국비 집행잔액	0	9,102	0	0	0	9,102	9,102	· 세입내용 : 2025년 가족센터 운영(다문화)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국비 집행잔액 9,102,94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자 수입(국비)	0	145	0	0	0	145	145	· 세입내용 : 2025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이자수입 반납 · 산출내역 : 국비 보조금 이자 145,110원 · 증감사유 : 발생이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국비)	0	427,743	0	0	0	427,743	427,743	· 세입내용 :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427,743,01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등반환금 /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도비)	0	65	0	0	0	65	65	· 세입내용 : 2025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산출내역 :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65,52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등반환금 /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여성폭력피해 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0	2,993	0	0	0	2,993	2,993	· 세입내용 : 2025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산출내역 :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2,993,77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등반환금 /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도비)	0	261	0	0	0	261	261	· 세입내용 : 2025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산출내역 :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261,24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등반환금 /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도민대상 폭력 예방교육 이자발생액	0	1	0	0	0	1	1	· 세입내용 : 2025년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자 반납 · 산출내역 : 도비 보조금 이자 1,480원 · 증감사유 : 발생이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보조금등반환금 /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0	1,760	0	0	0	1,760	1,760	· 세입내용 : 2025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 · 산출내역 :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1,760,24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등반환금 /사·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도비)	0	93,239	0	0	0	93,239	93,239	· 세입내용 : 202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93,239,740원 · 증감사유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동반아동 및 부식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동반아동지원비 및 부식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8,570	7,900	6,485	0	0	1,415	-670	
국비		0					0	
도비	2,571	2,370	1,946			424	-201	
시비	5,999	5,530	4,539			991	-46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1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동반아동 및 부식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동반아동지원비 및 부식비 : 경정(7,900,000원)-기정(6,485,000원) =	1,415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부식비 및 동반아동 지원으로 편익 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 도모
- 지원단가 : 동반아동비 1개월당 400천원 / 부식비 1일당 1천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 내시 된 도비 보조사업의 부족분 추가 편성
- 2026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도비)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7862(2026.05.20.)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	-	-	-	-	-	-	2023.11.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운영비 분기별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동반아동지원비 및 부식비 지원 : 입소자 성인 24명, 동반아동 6명
2025	· 동반아동지원비 및 부식비 지원 : 입소자 성인 24명, 동반아동 3명
2026	· 동반아동지원비 및 부식비 지원 : 입소자 성인 9명, 동반아동 0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069	7,069	-	-	
2025	8,570	8,570	-	-	
2026	6,485	6,485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수급 생계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동반아동지원비 및 부식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6,081	7,355	6,279	0	0	1,076	1,274	
국비	4,257	5,149	4,395			754	892	
도비	912	1,103	942			161	191	
시비	912	1,103	942			161	191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7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비수급 생계급여)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 : 경정(7,355,000원)-기정(6,279,000원)	= 1,076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의 기초생활 영위를 위한 생계비(주·부식비, 파복비 등)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월 426,741원 (30인 미만 시설 기준)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국비)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9966(2026.07.0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비수급 생계급여 지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비수급 생계비(18건) 및 아동교육지원비 지원(21건)
2025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비수급 생계비(24건) 및 아동교육지원비 지원(20건)
2026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비수급 생계비(11건)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081	5,050	-	1,031	
2025	6,081	5,678	-	403	
2026	6,279	4,628		1,651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냉방비 특별지원

사업기간	2026. 7. ~ 2026.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절기 대비 냉방비 특별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300	0	0	0	300	300	
국비		0					0	
도비		300				300	3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냉방비 특별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냉방비 : 300,000원*1회	= 3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절기 냉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보호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여성권익시설 지원사업(도비)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7963(2026.05.21.)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	-	-	-	-	-	-	2023.11.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7. ~ 2026. 12. : 냉방비 교부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가정폭력피해자		
사업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제4조제2항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5,550	17,000	15,550	0	0	1,450	1,450	
국비	10,885	11,900	10,885			1,015	1,015	
도비	2,333	2,550	2,333			217	217	
시비	2,332	2,550	2,332			218	21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50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경정(17,000,000원)-기정(15,550,000원)	= 1,45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및 동반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트라우마 극복과 자존감 회복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비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여성정책과-7863(2026.05.20.)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	-	-	-	-	-	-	2023.11.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2026. 12. : 치료 회복 프로그램 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개별상담(35회), 집단상담(19회), 심신회복캠프(1회), 기타 치료프로그램(2회)
2025	· 개별상담(35회), 집단상담(24회), 심신회복캠프(1회), 기타 치료프로그램(4회)
2026	· 개별상담(7회), 집단상담(6회) 기타 치료프로그램(1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2,000	12,000	-	-	
2025	15,550	15,550	-	-	
2026	15,550	15,550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성폭력 피해자		
사업목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성폭력 후유증을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1,000	8,360	6,700	0	0	1,660	-2,640	
국비	7,700	5,852	4,690			1,162	-1,848	
도비	1,650	1,254	1,005			249	-396	
시비	1,650	1,254	1,005			249	-396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6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경정(8,360,000원)-기정(6,700,000원) =	1,660	

□ 예산요구 사유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 내시 된 도비 보조사업의 부족분 추가 편성
- 2026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8954(2026.06.1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수시 의료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8명/193건)
2025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46명/202건)
2026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3명/109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2,511	12,345	-	166	
2025	11,000	11,000	-	-	
2026	6,700	5,225	-	1,475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성폭력 피해자		
사업목적		성폭력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2항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709	3,372	2,709	0	0	663	663	
국비	1,896	2,360	1,896			464	464	
도비	406	506	406			100	100	
시비	407	506	407			99	9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63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경정(3,372,000원)-기정(2,709,000원)	= 663	

□ 예산요구 사유

- 집단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1798(2026.01.2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3. ~ 2026. 12.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집단상담 : 8회 (6명) (타로상담, 여성주의 집단상담)
2025	· 집단상담 : 9회 (6명) (타로상담, 여성주의 집단상담)
2026	· 집단상담 : 4회 (5명) (타로상담, 여성주의 집단상담)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000	3,000		-	
2025	2,709	2,709		-	
2026	2,709	2,020		689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도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4명		
사업목적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23,540	152,960	222,011	0	0	-69,051	29,420	
국비	0	0	0			0	0	
도비	37,062	45,888	66,604			-20,716	8,826	
시비	86,478	107,072	155,407			-48,335	20,59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9,051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도비)	307-05 민간위탁금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건비 차액 : 경정(56,000,000원)-기정(96,519,000원)	= -40,519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인건비 차액 : 경정(96,960,000원)-기정(125,492,000원)	= -28,532	

□ 예산요구 사유

- 여성권익시설 국비 인건비의 부족분 지원으로 종사자의 권익 보장
 - 지원대상 : 3개소(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명절수당(설, 추석) 지급으로 처우개선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시설 종사자 입·퇴사자 간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감액
- 2026년 여성권익시설 지원사업(도비)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9344(2026.06.21.)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인건비 차액 분기별 지원
 - 2026. 01, 08. :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3개소 15명
2025	· 3개소 14명
2026	· 3개소 14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73,467	121,274	-	52,193	
2025	123,540	123,540	-	-	
2026	222,011	131,331	-	90,68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김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종사자 4명		
사업목적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7호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200	0	0	0	200	200	
국비		0					0	
도비		200				200	2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장기근속비 : 50,000원*4명*1회 =	200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3개소(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지급기준 : 현 소속시설 5년 이상 장기재직 종사자 / 연 1회 1인당 5만원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 확정내시 반영[경기도 여성정책과-9628(2026.06.26.)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9. :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운영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사우중로 1
사업규모	가정폭력·성폭력 바로희망팀 1개소		
사업목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별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 및 폭력 피해 재발 방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45,000	52,000	42,000	0	0	10,000	7,000	
국비	0	0	0			0	0	
도비	13,500	15,600	12,600			3,000	2,100	
시비	31,500	36,400	29,400			7,000	4,9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운영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피해자 지원비 : 경정(40,000,000원)-기정(30,000,000원)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112 신고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 기능 회복 도모
- 의료비, 심리상담 기관 연계 지원, 긴급 지원 및 물품 지원 등

□ 예산증감 사유

- 의료비 등 단가 상승 및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증액
- 2026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 변경내시 반영 [경기도 여성정책과-11222(2026.07.2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수시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단위: 건)

2024	지원대상				지원내용(복수선택)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스토킹폭력	기타	내방상담	가정방문	안전확인&심리상담	법률상담	기관연계	긴급분리&쉼터지원	복지정보제공	긴급지원	기타*
	2,378	9	15	5	90	64	2,787	90	289	47	247	144	1,522
	*기타: 기관상담, 동행, 확인 서류발급 등												
2025	지원대상				지원내용(복수선택)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스토킹폭력	기타	내방상담	가정방문	안전확인&심리상담	법률상담	기관연계	긴급분리&쉼터지원	복지정보제공	긴급지원	기타*
	2,198	16	8	84	277	35	4,320	123	485	37	148	49	1,495
2026	지원대상				지원내용(복수선택)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스토킹폭력	기타	내방상담	가정방문	안전확인&심리상담	법률상담	기관연계	긴급분리&쉼터지원	복지정보제공	긴급지원	기타*
	1,376	16	23	9	142	14	2,182	63	190	30	523	11	14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0,000	27,921	-	2,079	
2025	45,000	43,989	-	1,011	
2026	42,000	29,810	-	12,19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여성정책팀장 길윤정	담당자	행정7급 조아라	전화	5583
-----	-------	------------	-----	----------	----	------

가족센터 종사자 장기근속비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가족센터
사업규모	종사자 2명		
사업목적	김포시가족센터 종사자 권익보호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7호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00	0	0	0	100	100	
국비		0					0	
도비		100				100	1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	
가족센터 종사자 장기근속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장기근속비 : 50,000원*2명*1회 =	100	

□ 예산요구 사유

- 가족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 지급
 - 현 소속시설 5년 이상 장기재직 종사자 / 연 1회 1인당 5만원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가족센터 종사자 장기근속비 지급 사업 신설[경기도 가족정책과-3619(2026.02.2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9. : 가족센터 종사자 장기근속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황수정	담당자	복지7급 김성진	전화	5602
-----	-------	------------	-----	----------	----	------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가족센터
사업규모	아이돌봄사 113명		
사업목적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양육가정의 돌봄 환경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기도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69,360	76,080	44,070	0	0	32,010	6,720	
국비		0					0	
도비	20,808	22,824	13,221			9,603	2,016	
시비	48,552	53,256	30,849			22,407	4,70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010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영아돌봄수당 : 경정(57,380원*113명*12월)-기정(57,380원*64명*12월) =	32,010	

□ 예산요구 사유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수당 지급
- 월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시간당 1천원 지급 / 월 최대 60시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돌봄수당 지원규모 확대 (아이돌봄사 64명 → 113명)
-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 내시 된 도비 보조사업의 부족분 추가 편성
- 2026년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가족정책과-7360(2026.05.1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	-	-	-	-	-	-	2023. 7.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수당 지원(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732건 지급
2025	·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1,133건 지급
2026	·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589건 지급(26. 7월 기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2,500	36,600	-	5,900	
2025	69,360	62,137	-	7,223	
2026	44,070	44,070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황수정	담당자	복지7급 김성진	전화	5602
-----	-------	------------	-----	----------	----	------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가족센터
사업규모	아이돌봄사 180명		
사업목적	양육자의 긴급 또는 불가피한 상황(입원, 야근, 출장, 경조사 등에 따른 돌봄공백 발생 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기도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32,982	12,282	0	0	20,700	32,982	
국비		0					0	
도비		16,491	3,685	2,456		10,350	16,491	
시비		16,491	8,597	-2,456		10,350	16,49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700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307-05 민간위탁금	·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 : 경정[(수당 2,000원*420명*12월)+(운영비 22,902,000원)] - 기정[(수당 2,000원*420명*12월)+(운영비 2,202,000원)]	= 20,700	

□ 예산요구 사유

-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사 추가 수당 및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수행기관 운영비 증액 (2,202천원 → 22,902천원)
 - 전담인력 인원 확대 및 수당 증액 (5명 → 7명 / 1인 월평균 6만원 → 18만원)
 - 수행기관 운영비 추가 지원 (월 약 700천원)
- 2026년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가족정책과-4816(2026.03.24.)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	-	-	-	-	-	-	2023.7.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12. : 수시 지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아이돌봄사 일시연계 추가수당 지급(188명 / 누적인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2,282	12,282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황수정	담당자	복지7급 김성진	전화	5602
-----	-------	------------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미충족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제2호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4,400	7,200	0	0	7,200	14,400	
국비		0					0	
도비		4,320	2,160			2,160	4,320	
시비		10,080	5,040			5,040	10,08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7,20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아동양육비 : 경정(100,000원*12명*12월) - 기정(100,000원*6명*12월) =	7,200	

□ 예산요구 사유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신규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6명 → 12명)
- 2026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가족정책과-7448(2026.05.1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수시 지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매월 7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7,200	5,400	-	1,8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가족지원팀장 황수정	담당자	행정8급 조선희	전화	5601
-----	-------	------------	-----	----------	----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본소)
사업규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1개소			
사업목적		외국인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역량 강화 지원(통·번역, 한국어교육, 문화행사 지원 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13조(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786,834	879,411	836,811	25,600	0	17,000	92,57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86,834	879,411	836,811	25,600		17,000	92,577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000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경정(879,411,000원)-기정(862,411,000원) - 건물 외벽 방수 공사(17,000,000원)	17,000	

□ 예산요구 사유

- 건물 외벽 노후화에 따른 우천 시 누수 발생(기계설비 시설 지하실, 상담실 및 강의실 등)

□ 예산증감 사유

- 건물 외벽 누수 보수를 위한 방수 공사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9. :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추진
 - 2026. 10. : 건물 외벽 방수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상담, 통역(5,090회, 1,871명) · 한국어교육(704회, 508명), 태권도교실(76회, 17명) · 어린이집 다문화마을 체험(25회, 495명) · 제17회 세계인 큰잔치(약 10,000여명)
2025	· 상담, 통역(2,782회, 958명) · 한국어교육(568회, 455명), 태권도교실(80회, 16명) · 어린이집 다문화마을 체험(12회, 217명) · 제18회 세계인 큰잔치(약 10,000여명)
2026	· 상담, 통역(2,754회, 1,070명) · 한국어교육(356회, 245명), 태권도교실(38회, 20명) · 상호문화이해교육(1회, 18명) · 외국인근로자 가족 한국 적응 프로그램 운영(1회, 26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42,322	677,854	-	64,468	
2025	786,834	786,834	-		
2026	862,411	862,411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김미화	담당자	행정7급 도우리	전화	5607
-----	-------	------------	-----	----------	----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본소)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분소)
사업규모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11회		
사업목적	일상생활 중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긴급지원비 지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제6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7,600	11,000	7,667	0	0	3,333	3,400	
국비		0					0	
도비	2,300	3,300	2,300			1,000	1,000	
시비	5,300	7,700	5,367			2,333	2,4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33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긴급지원비 : 경정(11,000,000원)-기정(7,667,000원)	= 3,333	

□ 예산요구 사유

-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 증가함에 따라 긴급지원비 수요 증가
- 생계비 1인가구 기준 783천원, 의료비·장제비 각 1,000천원 지원 등

□ 예산증감 사유

-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7건 → 11건)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4262(2026.04.2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4. 10. : 보조금 추가 수요조사 제출(市 → 道)
 - 2026. 04. 23. : 변경내시
 - 2026. 09. :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추진
 - 2026. 12. :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긴급지원 3건(생계비 1가구, 의료비 1명, 장제비 1명)
2025	· 긴급지원 7건(생계비 4가구, 의료비 3명)
2026	· 긴급지원 2건(생계비 1가구, 의료비 1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7,000	4,143	-	2,857	
2025	7,600	7,600	-	-	
2026	7,667	3,834	-	3,83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김미화	담당자	행정7급 도우리	전화	5607
-----	-------	------------	-----	----------	----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본소)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분소)	
사업규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12명				
사업목적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7,200	0	0	11,400	-4,200	7,200	
국비		0					0	
도비		7,200			11,400	-4,200	7,20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200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 처우개선비 : 경정(50,000원*12월*12명)-기정(50,000원*12월*19명)	= -4,200	

□ 예산요구 사유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처우개선비(50,000원)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제외로 예산 감액 (19명→12명)
-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복지정책과-11265(2026.06.04.)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29.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현황 제출(市→道)
- 2026. 02. 25. :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가내시(19명) 시달
- 2026. 03. 06. : 상반기 도비보조금 교부
- 2026. 03. 31. : 성립전예산 편성
- 2026. 06. 08. : 처우개선비 및 보조비 변경내시(12명) 시달
- 2026. 04. ~ 12. : 매월 처우개선비 지급(1~3월분 소급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처우개선비 지급 : 12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1,400	4,200	-	7,2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김미화	담당자	행정7급 도우리	전화	5607
-----	-------	------------	-----	----------	----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본소)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분소)
사업규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12명		
사업목적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2,880	0	0	4,560	-1,680	2,880	
국비		0					0	
도비		2,880			4,560	-1,680	2,88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80	
외국인주민지원 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 경정(20,000원*12월*12명)-기정(20,000원*12월*19명)	= -1,680	

□ 예산요구 사유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에게 매월 웰빙보조비(20,000원)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제외로 예산 감액 (19명→12명)
-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변경내시 반영[경기도 복지정책과-11265(2026.06.04.)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29.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현황 제출(市→道)
- 2026. 02. 25. :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가내시(19명) 시달
- 2026. 03. 06. : 상반기 도비보조금 교부
- 2026. 03. 31. : 성립전예산 편성
- 2026. 06. 08. :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변경내시(12명) 시달
- 2026. 04. ~ 12. : 매월 웰빙보조비 지급 (1~3월분 소급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웰빙보조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4,560	1,680	-	2,88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김미화	담당자	행정7급 도우리	전화	5607
-----	-------	------------	-----	----------	----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 서 명	아동보육과
기 정 액	206,192,493천원	요 구 액	1,315,377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세외수입	3,550	93,165	0	0	0	93,165	93,165	
경상적세외수입	0	14,928	0	0	0	14,928	14,928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아동발달지원 계좌 예탁금 이자	0	86	0	0	0	86	86	· 세입내용 : 아동발달지원계좌 예탁금 이자 · 산출내역 : 정산이자 86,03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정산 이자	0	247	0	0	0	247	247	· 세입내용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정산이자 · 산출내역 : 정산이자 247,69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지원사업 정산 이자	0	51	0	0	0	51	51	· 세입내용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정산이자 · 산출내역 : 정산이자 51,69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시간제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0	61	0	0	0	61	61	· 세입내용 : 시간제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정산이자 61,56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0	9,024	0	0	0	9,024	9,024	· 세입내용 :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정산이자 9,024,92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0	2,336	0	0	0	2,336	2,336	· 세입내용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정산이자 2,336,42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외국인 자녀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0	1,332	0	0	0	1,332	1,332	· 세입내용 : 외국인 자녀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정산이자 1,332,19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외국인 아동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0	1,265	0	0	0	1,265	1,265	· 세입내용 : 외국인 아동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정산이자 1,265,24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정산 이자	0	23	0	0	0	23	23	· 세입내용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자재비) 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어린이집 3개소 정산 이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정산 이자	0	30	0	0	0	30	30	· 세입내용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 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어린이집 2개소 정산 이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1년미만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이자 반납	0	11	0	0	0	11	11	· 세입내용 : 202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1년미만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이자 · 산출내역 : 이자 11,20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6년 상반기 아동보육과 보통 예금통장 이자	0	428	0	0	0	428	428	· 세입내용 : 2026년 상반기 아동보육과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 산출내역 : 정산이자 428,510원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020년 육아종합 지원센터 부모교육 이자 반납	0	34	0	0	0	34	34	· 세입내용 :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이자 반납 · 산출내역 : 이자 34,640원(국비50%/시비50%) · 증감사유 : 2020년도 이나라도움 반납 누락에 따른 세입예산 추가 편성
임시적세외수입		0	75,237	0	0	0	75,237	75,237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미반납액 반납	0	123	0	0	0	123	123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미반납액 반납 · 산출내역 : 1개소 인건비 반납액 123,200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3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 퇴직 적립금 집행잔액 반납	0	144	0	0	0	144	144	· 세입내용 : 2023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 퇴직적립금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잔액 144,660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과지급금 반납	0	2,466	0	0	0	2,466	2,466	· 세입내용 :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과지급금 자체보조금 반납 · 산출내역 : 2개 센터 인건비 과지급분 환수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2~2025년 다함께 돌봄센터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반납	0	1,056	0	0	0	1,056	1,056	· 세입내용 : 2022년~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4대보험 및 퇴직적립 정산금 자체보조금 반납 · 산출내역 : 15개 센터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6년 아동발달 지원계좌 중도해지건 과년도 정부지원금 원금 및 이자 반납	0	30	0	0	0	30	30	· 세입내용 : 2026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중도해지건 과년도 정부지원금 원금 및 이자 반납 · 산출내역 : 반납액 30,120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정산 잔액	0	55	0	0	0	55	55	· 세입내용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정산 잔액 · 산출내역 : 잔액 55,980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지원사업 정산 잔액	0	135	0	0	0	135	135	· 세입내용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정산잔액 · 산출내역 : 잔액 135,990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시간제보육료 예약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0	1,805	0	0	0	1,805	1,805	· 세입내용 : 시간제보육료 예약금 연말정산 잔액 · 산출내역 : 잔액 1,805,710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약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0	8,933	0	0	0	8,933	8,933	· 세입내용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약금 연말정산 잔액 · 산출내역 : 잔액 8,933,100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외국인 자녀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0	40,860	0	0	0	40,860	40,860	· 세입내용 : 외국인 자녀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잔액 · 산출내역 : 잔액 40,860,930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외국인 아동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0	10,245	0	0	0	10,245	10,245	· 세입내용 : 외국인 아동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잔액 · 산출내역 : 잔액 10,245,870원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0	4,264	0	0	0	4,264	4,264	· 세입내용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 산출내역 : 13개소 4,264,76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영아전담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0	464	0	0	0	464	464	· 세입내용 : 영아전담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 산출내역 : 3개소 464,95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2025년 1년미만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납	0	407	0	0	0	407	407	· 세입내용 : 1년미만 근무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납 · 산출내역 : 2024년 1개소 133,400원, 2025년 7개소 273,83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공기살균기 보조금 반납	0	216	0	0	0	216	216	· 세입내용 : 공기살균기 보조금 착오신청에 따른 반납 · 산출내역 : 1개소 216,00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공기청정기 보조금 반납	0	209	0	0	0	209	209	· 세입내용 : 공기청정기 보조금 착오신청에 따른 반납 · 산출내역 : 1개소 209,97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교재교구비 보조금 반납	0	440	0	0	0	440	440	· 세입내용 : 보조금 미사용에 따른 교재교구비 반납 · 산출내역 : 1개소 440,00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행정처분 명령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비) 반납	0	14	0	0	0	14	14	· 세입내용 : 행정처분명령에 의한 운영비(급식비) 반납 · 산출내역 : 1개소 14,80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행정처분 명령에 의한 선도교육청 유아 급식비 반납	0	102	0	0	0	102	102	· 세입내용 : 행정처분명령에 의한 선도교육청 유아 급식비 반납 · 산출내역 : 1개소 102,68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5년 해외체류 90일경과 및 중복지급 등에 따른 부모급여 반납	0	1,600	0	0	0	1,600	1,600	· 세입내용 : 해외체류 및 중복지급에 따른 부모 급여 반납 · 산출내역 : 6명, 1,600,000원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환경개선비 감가상각 후 반납	0	1,200	0	0	0	1,200	1,200	· 세입내용 :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민간·가정어 린이집 환경개선비 반환금 · 산출내역 : 2024년 총 보조금 2,000천원 중 40% 감가상각 후 반납
	기타수입 /그외수입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	0	39	0	0	0	39	39	· 세입내용 : 2025년 아동보육과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환급 · 산출내역 : 환급액 39,620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기타수입 /그외수입 ◎202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1년미만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0	430	0	0	0	430	430	· 세입내용 : 202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1년미만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 산출내역 : 1명 430,700원 반납
	지방행정정제재 부과금	3,550	3,000	0	0	0	3,000	3,000	
	과태료/기타과태료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50	400	0	0	0	400	400	· 세입내용 : 하절기 어린이집 정기안전점검 시 위반사항 확인 · 산출내역 : 어린이집 1개소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 ◎아동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2,900	2,600	0	0	0	2,600	2,600	· 세입내용 : 해외체류 90일 이상에 따른 아동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 산출내역 : 3명 · 증감사유 : 환수금액 변동에 따라 세입예산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1,531,775	0	0	0	1,531,775	1,531,775	
	보전수입등	0	1,531,775	0	0	0	1,531,775	1,531,775	
	보조금등 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미반납액 반납	0	246	0	0	0	246	246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미반납액 반납 · 산출내역 : 1개소 인건비 반납액 246,390원
	보조금등 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3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 퇴직 적립금 집행잔액 반납	0	289	0	0	0	289	289	· 세입내용 : 2023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 퇴직적립금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잔액 289,320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과지급금 반납	0	3,625	0	0	0	3,625	3,625	· 세입내용 :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과지급금 국고보조금 반납 · 산출내역 : 2개 센터 인건비 과지급분 환수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2~2025년 다함께 돌봄센터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반납	0	887	0	0	0	887	887	· 세입내용 : 2022년~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정산금 · 산출내역 : 15개 센터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6년 아동발달 지원계좌 중도해지건 과년도 정부지원금 원금 및 이자 반납	0	82	0	0	0	82	82	· 세입내용 : 2026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중도해지건 과년도 정부지원금 원금 및 이자 반납 · 산출내역 : 반납액 82,680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0	1,518	0	0	0	1,518	1,518	· 세입내용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279,720원, 이자 1,238,370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0	375	0	0	0	375	375	· 세입내용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271,980원, 이자 103,380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시간제보육료 예약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0	3,734	0	0	0	3,734	3,734	· 세입내용 : 시간제보육료 예약금 연말정산 집행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3,611,430원, 이자 123,130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영유아보육료 예약금 연말정산 이자	0	90,249	0	0	0	90,249	90,249	· 세입내용 : 영유아보육료 예약금 연말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이자 90,249,330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0	21,323	0	0	0	21,323	21,323	· 세입내용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 산출내역 : 13개소 21,323,830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영아전담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0	2,324	0	0	0	2,324	2,324	· 세입내용 : 영아전담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 산출내역 : 3개소 2,324,720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1년미만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납	0	1,369	0	0	0	1,369	1,369	· 세입내용 : 1년미만 근무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납 · 산출내역 : 7개소 1,369,050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정산 이자	0	46	0	0	0	46	46	· 세입내용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자재비) 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어린이집 3개소 정산 이자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정산 이자	0	61	0	0	0	61	61	· 세입내용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 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어린이집 2개소 정산 이자
보조금등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지역아동센터 인 건비 미반납액 반납	0	123	0	0	0	123	123	· 세입내용 : 2025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미반납액 반납 · 산출내역 : 1개소 인건비 반납액 123,200원
보조금등 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3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 퇴직 적립금 집행잔액 반납	0	144	0	0	0	144	144	· 세입내용 : 2023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 퇴직적립금 집행잔액 반납 · 산출내역 : 잔액 144,66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과지급금 반납	0	1,985	0	0	0	1,985	1,985	· 세입내용 :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과지급금 반납사항 · 산출내역 : 2개 센터 인건비 과지급분 환수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2~2025년 다함께 돌봄센터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반납	0	706	0	0	0	706	706	· 세입내용 : 2022년~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4대보험 및 퇴직적립 정산금 · 산출내역 : 15개 센터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반납
보조금반환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6년 아동발달 지원계좌 중도해지건 과년도 정부지원금 원금 및 이자 반납	0	5	0	0	0	5	5	· 세입내용 : 2026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중도해지건 과년도 정부지원금 원금 및 이자 반납 · 산출내역 : 반납액 5,31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0	708	0	0	0	708	708	· 세입내용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130,530원, 이자 577,90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0	187	0	0	0	187	187	· 세입내용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지원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135,990원, 이자 51,69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1년미만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납	0	638	0	0	0	638	638	· 세입내용 : 1년미만 근무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납 · 산출내역 : 7개소 638,890원 반납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시간제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0	1,867	0	0	0	1,867	1,867	· 세입내용 : 시간제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1,805,710원, 이자 61,56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0	21,058	0	0	0	21,058	21,058	· 세입내용 : 영유아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이자 21,058,18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누리과정 운영비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0	1,211,641	0	0	0	1,211,641	1,211,641	· 세입내용 : 누리과정 운영비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1,188,756,310원, 이자 22,885,08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0	4,829	0	0	0	4,829	4,829	· 세입내용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3,828,470원, 이자 1,001,33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0	132,485	0	0	0	132,485	132,485	· 세입내용 : 누리과정 4~5세 추가지원 예탁금 연말 정산 집행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129,811,590원, 이자 2,673,47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행정처분 명령에 의한 누리 과정 운영비 반납	0	101	0	0	0	101	101	· 세입내용 : 행정처분 명령에 의한 누리과정 운영비 반납 · 산출내역 : 1개소 101,090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외국인 자녀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0	18,082	0	0	0	18,082	18,082	· 세입내용 : 외국인 자녀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집행 잔액 및 이자 · 산출내역 : 잔액 17,511,830원, 이자 570,940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0	9,951	0	0	0	9,951	9,951	· 세입내용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 산출내역 : 13개소 9,951,130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영아전담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0	1,084	0	0	0	1,084	1,084	· 세입내용 : 영아전담 어린이집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 인건비 반납 · 산출내역 : 3개소 1,084,870원 반납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정산 이자	0	23	0	0	0	23	23	· 세입내용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자재비) 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어린이집 3개소 정산 이자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5년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정산 이자	0	30	0	0	0	30	30	· 세입내용 : 2025년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 정산 이자 · 산출내역 : 어린이집 2개소 정산 이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사업목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건강한 성장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호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50,076	390,662	358,897	7,603	0	24,162	40,586	
국비	175,038	195,331	179,449	3,801		12,081	20,293	
도비	87,519	97,666	89,724	1,901		6,041	10,147	
시비	87,519	97,665	89,724	1,901		6,040	10,14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16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 경정(1,547,760원*20개소*12월) - 기정(1,447,080원*20개소*12월) =	24,162	

□ 예산요구 사유

- 학습지원, 정서적 상담, 체험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지역아동센터 동절기 난방비(2개월) 및 하절기 냉방비(2개월) 운영지원에 따른 변경내시 증액
-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균특)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경기도 아동돌봄과-11856(2026.04.30.)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 2026. 1. ~ 2026. 12. : 분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총 20개소 운영비 지원 - 읍면 30인 이상 2개소, 도시 30인 이상 2개소 - 읍면 29인 이하 1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 읍면 19인 이하 8개소, 도시 19인 이하 3개소 · 법인시설 추가운영비 - 19인이하 : 200,000원*2개소 - 29인이하 : 250,000원*2개소
2025	· 총 20개소 운영비 지원 - 읍면 30인 이상 2개소, 도시 30인 이상 2개소 - 읍면 29인 이하 1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 읍면 19인 이하 8개소, 도시 19인 이하 3개소 · 법인시설 추가운영비 - 19인이하 : 200,000원*3개소 - 29인이하 : 250,000원*4개소
2026	· 총 20개소 운영비 지원 - 읍면 30인 이상 2개소, 도시 30인 이상 2개소 - 읍면 29인 이하 3개소, 도시 29인 이하 4개소 - 읍면 19인 이하 6개소, 도시 19인 이하 3개소 · 법인시설 추가운영비 - 19인이하 : 200,000원*3개소 - 29인이하 : 250,000원*4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55,764	341,837	-	13,927	
2025	350,076	349,648	-	428	
2026	366,500	276,467	-	90,03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윤아	전화	5313
-----	-------	------------	-----	------------	----	------

지역아동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6. 9.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지역아동센터 4개소		
사업목적	방학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으로 건강한 성장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호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45,464	0	0	0	45,464	45,464	
국비		22,732				22,732	22,732	
도비		11,366				11,366	11,366	
시비		11,366				11,366	11,36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464	
지역아동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역아동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운영비 - 식사 및 간식비 : 10,500,000원 * 4개소 - 인센티브 : 866,000원 * 4개소	= 42,000 = 3,464	

□ 예산요구 사유

- 방학기간 중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안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센터 운영비 지급
(지역아동센터 4개소 지원 : 하성만나, 월곶, 밝은내일, 꽃가람)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2026년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 안내」에 따른 예산 편성
※ 2026년 방학 한시 지역아동센터 틈새돌봄 지원 사업 변경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20353(2026.8.7.)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9. ~ 2026. 12.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2025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윤아	전화	5313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다함께돌봄센터 23개소			
사업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76,000	309,280	284,280	0	0	25,000	33,280	
국비	138,000	154,640	142,140			12,500	16,640	
도비	69,000	77,320	71,070			6,250	8,320	
시비	69,000	77,320	71,070			6,250	8,32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운영비 : (경정)1,120,579원*23개소*12월 - (기정)1,030,000원*23개소*12월 =	25,000	

□ 예산요구 사유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다함께돌봄센터 동절기 난방비(2개월) 및 하절기 냉방비(2개월) 운영지원에 따른 변경내시 증액
-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균특사업(운영비) 변경 내시[경기도 아동돌봄과-15882(2026.06.24.)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	-	-	-	-	-	-	2024.11.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20개소)
2025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23개소)
2026	· 돌봄센터 운영(총 23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48,000	232,123	-	15,877	
2025	276,000	273,859	-	2,141	
2026	284,280	231,610	-	52,67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차은이	전화	5310
-----	-------	------------	-----	------------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다함께 돌봄센터 23개소		
사업목적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415,800	345,500	375,700	0	0	-30,200	-70,3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15,800	345,500	375,700			-30,200	-70,3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200	
다함께 돌봄센터지원 (자체)	307-05 민간위탁금	· 돌봄센터 운영비 : 경정(1,179,350원*23개소*12월)-기정(1,325,000원*23개소*12월)	≒ -40,200	
	402-03 민간위탁사업비	· 돌봄센터 물품구입비 : 경정(1,428,580원*14개소)-기정(1,000,000원*10개소)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운영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돌봄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 감액 및 돌봄센터 내 노후화된 물품 증가로 민간위탁사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	-	-	-	-	-	-	2024.11.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다함께돌봄센터 분기별 민간위탁금 지급 및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20개소)
2025	· 돌봄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총 23개소)
2026	· 돌봄센터 운영(총 23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24,210	256,644	54,500	113,066	
2025	470,300	337,648	-	132,652	
2026	375,700	242,287	-	133,41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차은이	전화	5310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6. 9.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사업목적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해당조례	김포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29,898	0	0	0	29,898	29,898	
국비		14,949				14,949	14,949	
도비		7,474				7,474	7,474	
시비		7,475				7,475	7,47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898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운영비 지원 - 식사 및 간식비 : 9,100,000원 * 3개소 - 인센티브 : 866,000원 * 3개소	= 27,300 = 2,598	

□ 예산요구 사유

- 방학기간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안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운영비 지급
-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지원(모담초중학교점, 고촌복지회관점, 통진청사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2026년 초등방학 틈새돌봄사업 안내」에 따른 예산 편성
※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사업 변경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9461(2026.7.29.)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9. ~ 2026. 12.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7급 차은이	전화	5310
-----	-------	------------	-----	------------	----	------

아동수당 지급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만 9세 미만의 아동(0~107개월) 약 32,400명		
사업목적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수당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3,781,280	38,881,041	39,829,609	-404,046	0	-544,522	5,099,761	
국비	27,024,025	31,104,833	31,863,688	-323,238		-435,617	4,080,808	
도비	3,041,395	3,499,294	3,584,664	-36,363		-49,007	457,899	
시비	3,715,860	4,276,914	4,381,257	-44,445		-59,898	561,054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44,522	
아동수당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아동수당 : 경정(100,000원*32,400명*12월)-기정(100,000원*32,854명*12월)	= -544,522	

□ 예산요구 사유

-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 지원 대상 : 만 9세 미만 아동 (0~107개월)
 - 지원 금액 : 아동 한 명당 월 100,000원 현금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출생아 감소 및 출입국 등 지급 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예상으로 예산 감액 (도 변경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아동수당 변동사항 반영 및 매월 25일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만 8세 미만 아동 매월 약 31,635명 지급
2025	· 만 8세 미만 아동 매월 약 27,279명 지급
2026	· 만 9세 미만 아동 매월 약 32,400명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7,813,952	36,662,900	-	1,151,052	
2025	33,781,280	32,998,400	-	782,880	
2026	39,425,563	22,359,710	-	17,065,853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행정7급 권나현	전화	5312
-----	-------	------------	-----	----------	----	------

결식아동 급식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결식아동 1,257명		
사업목적	맛벌이, 한부모 가정 등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김포시장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158,590	2,152,150	1,234,600	364,000	0	553,550	-6,440	
국비		0					0	
도비	647,577	645,645	370,380	109,200		166,065	-1,932	
시비	1,511,013	1,506,505	864,220	254,800		387,485	-4,50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53,550	
결식아동 급식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G드림카드: 경정(10,000원*770명*125식)-기정(10,000원*760명*93식) =	255,700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역아동센터: 경정(10,000원*487명*244식)-기정(10,000원*455명*196식) ≒	297,850	

□ 예산요구 사유

- 맛벌이, 한부모 등 다양한 가구형태 증가에 따른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지원 필요
-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급식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 부족분에 대한 도 변경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1. ~ 2026.12. : 지원대상 아동 선정 및 홍보
 - 2026.01. ~ 2026.12. : 매월 G드림 급식카드 충전,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급
 - 2026.06. ~ 2026.12. :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한 여름·겨울방학 전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결식아동 급식 1,304명 지원
2025	· 결식아동 급식 1,256명 지원
2026	· 결식아동 급식 1,257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082,590	2,076,696	-	1,005,894	
2025	2,158,590	1,948,603	-	209,987	
2026	1,598,600	1,598,586	-	14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7급 박은미 사회복지8급 강민정	전화	5311 5312
-----	-------	------------	-----	--------------------------	----	--------------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564(구래동, 지오프라자)
사업규모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사업목적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을 통한 양질의 전문사례관리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 제3항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47,183	51,436	58,436	0	0	-7,000	4,253	
국비		0						
도비	14,155	15,431	17,531			-2,100	1,276	
시비	33,028	36,005	40,905			-4,900	2,977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지원 : 경정(3,429,100원*15명*1개소) - 기정(3,895,800원*15명*1개소) =	-7,000	

□ 예산요구 사유

- 2026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인건비 추가지원) 변경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8936(2026.7.23.)호]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호봉 차이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동의	-	-
일자	2025.11.	-	-	-	-	-	-	-	2022.03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반기별 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
- 2026. 01. ~ 2026. 12. : 반기별 정산보고 및 확인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지원(45,211,800원)
2025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지원(46,750,500원)
2026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지원(25,047,72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0,830	45,212	-	15,618	
2025	47,183	46,750	-	433	
2026	58,436	25,047	-	33,389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문지현	전화	5341
-----	-------	------------	-----	------------	----	------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한강4로 564(구래동, 지오프라자)
사업규모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5명		
사업목적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통한 장기근속 지원 및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4,000	23,200	25,200	0	0	-2,000	-800	
국비		0						
도비	7,200	6,960	7,560			-600	-240	
시비	16,800	16,240	17,640			-1,400	-56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경정(129,000원*15명*12월) - 기정(140,000원*15명*12월)	-2,000	

□ 예산요구 사유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통한 업무 동기 부여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전문성 유지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특수근무수당) 변경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8936(2026.7.23.)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
일자	2025.11.	-	-	-	-	-	-	-	2022.03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매월 특수근무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5명 특수근무수당 지원(20,750,000원)
2025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5명 특수근무수당 지원(22,050,000원)
2026	·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5명 특수근무수당 지원(12,80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1,600	20,750	-	850	
2025	24,000	22,050	-	1,950	
2026	25,200	12,800	-	12,4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문지현	전화	5341
-----	-------	------------	-----	------------	----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학대피해아동쉼터(2개소)		
사업목적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복귀를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026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17,800	612,396	610,796	1,200	0	400	94,596	
국비	207,118	244,956	244,316	480		160	37,838	
도비	155,341	183,720	183,240	360		120	28,379	
시비	155,341	183,720	183,240	360		120	28,37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 경정(612,396,000원) - 기정(611,996,000원) - 냉방비 지원 : 100,000원*2월*2개소	= 40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름철 냉방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비(냉방비) 추가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

※ 2026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업 예산 변경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9928(2026.08.03.)]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일자	2025.11.	-	-	-	-	-	-	-	2023.1.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9.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운영비(냉방비) 추가 지급
 - 2026. 01. ~ 2026. 12. : 분기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운영비 집행(456,707천원)
2025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운영비 집행(258,700천원)
2026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운영비 집행(459,297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96,788	456,707	-	40,081	
2025	517,800	479,029	-	38,771	
2026	611,996	459,297	-	152,699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9급 민가희	전화	5343
-----	-------	------------	-----	------------	----	------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방비 특별지원

사업기간	2026. 7. 1. ~ 2026. 12. 31.	사업위치	비공개시설
사업규모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사업목적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호 환경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600	0	0	0	600	600	
국비		0					0	
도비		600				600	6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방비 특별지원	307-05 민간위탁금	·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방비 지원 : 100,000원*3월*2개소 =	600	

□ 예산요구 사유

-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냉방비 특별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2026년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방비 특별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 2026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 변경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3761(2026.5.28.)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9.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 냉방비 지급
 - 2026. 09. ~ 2026. 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9급 민가희	전화	5343
-----	-------	------------	-----	------------	----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4개소		
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584,912	697,984	694,784	2,400	0	800	113,072	
국비	233,964	279,194	277,914	960		320	45,230	
도비	175,474	209,395	208,435	720		240	33,921	
시비	175,474	209,395	208,435	720		240	33,92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 경정(697,984,000원) - 기정(697,184,000원) = - 그룹홈 냉방비 지원 : 100,000원*2월*4개소	80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름철 냉방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비(냉방비) 추가 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당 100,000원*2개월 지원(총 4개소)

□ 예산증감 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
- ※ 2026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변경내시 및 부담지시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6121(2026.6.26.)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9.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냉방비) 추가 지급
 - 2026. 01. ~ 2026. 12. : 분기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소풍, 다움, 드리머, 은빛마을)
2025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소풍, 다움, 드리머, 은빛마을)
2026	- 인건비, 운영비 4개소 지원(소풍, 다움, 드리머, 은빛마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562,976	562,974	-	2	
2025	584,912	557,686	-	27,226	
2026	697,184	523,488	-	173,696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태혁	전화	5340
-----	-------	------------	-----	------------	----	------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

사업기간	2026. 9.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4개소		
사업목적	여름철 냉방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200	0	0	0	1,200	1,200	
국비		0					0	
도비		1,200				1,200	1,2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공동생활가정 냉방비 지원 : 100,000원*3월*4개소 =	1,200	

□ 예산요구 사유

-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냉방비 특별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2026년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 2026년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 확정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4412(2026.6.5.)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9.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냉방비 지급
 - 2026. 09. ~ 2026. 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7급 이태혁	전화	5340
-----	-------	------------	-----	------------	----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가정위탁아동 73명		
사업목적		원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위탁을 통해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
		제59조(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99,200	360,187	210,500	90,187	0	59,500	-39,013	
국비		0					0	
도비	39,920	30,069	21,050	9,019			-9,851	
시비	359,280	330,118	189,450	81,168		59,500	-29,162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9,500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경정(360,187,000원)-기정(300,687,000원) - 양육보조금 : 450,000원*65명*2월 - 아동용품구입비 : 1,000,000원*1명	= 58,500 = 1,000	

□ 예산요구 사유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후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필요
- 아동복지법에 의거 가정위탁(친인척, 친인척 외, 전문위탁)책정 후 양육보조금 및 신규 위탁 가정에 초기 아동적응 및 양육물품 구입을 위한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기정 사업량 대비 대상 아동 증가(59명 → 65명)로 인한 증액 편성(시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매월 20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신규가정위탁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71명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5가구 지원
2025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71명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2가구 지원
2026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67명 지원, 아동용품구입비 2가구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41,000	329,800	-	11,200	
2025	399,200	357,900	-	41,300	
2026	300,687	209,450	-	91,237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 마급 유현진	전화	5346
-----	-------	------------	-----	------------	----	------

입양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입양아동 4명		
사업목적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기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2호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제3항에 따른 보호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4,278	4,000	6,000	0	0	-2,000	-15,054	
국비	10,013	2,800	4,200			-1,400	-10,538	
도비	624	180	270			-90	-678	
시비	3,641	1,020	1,530			-510	-3,83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	
입양비용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입양비용 지원 : 경정(1,000,000원*4명) - 기정(1,000,000원*6명) =	-2,000	

□ 예산요구 사유

- 입양가정에 입양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6 입양비용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1차). [경기도 아동돌봄과-18595(2026.7.2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국내 입양 발생 시 수시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입양아동 7명 지원
2025	· 입양아동 3명 지원
2026	· 지원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8,900	17,200	-	1,700	
2025	14,278	8,100	-	6,178	
2026	6,000	-	-	6,0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마급 이미희	전화	5345
-----	-------	------------	-----	-----------	----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입양대상아동 3명		
사업목적	입양 결정 아동이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2호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제13조(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제3항에 따른 보호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48,000	42,000	48,000	0	0	-6,000	-6,000	
국비	33,600	29,400	33,600			-4,200	-4,200	
도비	2,160	1,890	2,160			-270	-270	
시비	12,240	10,710	12,240			-1,530	-1,53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 경정(1,000,000원*3명*12월) - 기정(1,000,000원*4명*12월)	-6,000	

□ 예산요구 사유

- 입양 대상 결정아동이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 보호비를 지급하여 입양의 공적 책임 강화

□ 예산증감 사유

- 2026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2차) [경기도 아동돌봄과-20616(2026.8.12.)]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매달 20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7.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입양대상아동 19명 지원
2025	- 입양대상아동 6명 지원
2026	- 입양대상아동 4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8,000	73,000	-	35,000	
2025	48,000	28,000	-	20,000	
2026	48,000	20,000	-	28,0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마급 이미희	전화	5345
-----	-------	------------	-----	-----------	----	------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입양아동 4명		
사업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국내 입양 활성화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32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0,817	8,000	12,000	0	0	-4,000	-2,817	
국비	7,569	5,600	8,400			-2,800	-1,969	
도비	489	360	540			-180	-129	
시비	2,759	2,040	3,060			-1,020	-719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	
입양축하금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입양축하금 지원 : 경정(2,000,000원*4명) - 기정(2,000,000원*6명) =	-4,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아동을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축하금 지급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2026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축하금) 사업 변경내시 통보(1차) [경기도 아동돌봄과-18615(2026.7.2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국내 입양축하금을 신청한 입양가정에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입양아동 7명 지원
2025	· 입양아동 2명 지원
2026	· 입양아동 1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4,000	14,000	-	-	
2025	10,817	400	-	6,817	
2026	12,000	2,000	-	10,0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마급 이미희	전화	5345
-----	-------	------------	-----	-----------	----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위탁아동 2명		
사업목적	전문위탁가정(만2세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대상 가정형 보호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법령 위임규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대상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7,000	24,000	12,000	0	0	12,000	7,000	
국비	11,900	16,800	8,400			8,400	4,900	
도비	765	1,080	540			540	315	
시비	4,335	6,120	3,060			3,060	1,78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전문아동보호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경정(1,000,000원*2명*12월) - 기정(1,000,000원*1명*12월) =	12,000	

□ 예산요구 사유

- 학대피해 아동, 2세이하(36개월 미만), 장애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이 가정위탁 또는 일시위탁으로 보호조치 되었을 시 양육보조금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문보호 대상 아동 증가(1명→ 2명)로 증액 편성
 ※ 2026년 가정위탁아동지원 전문아동보호비 변경내시 통보[경기도 아동돌봄과-16114(2026.6.26.)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 매월 20일 전문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전문가정위탁아동 3명지원
2025	- 전문가정위탁아동 2명지원
2026	- 전문가정위탁아동 2명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39,000	27,500	-	11,500	
2025	17,000	16,500	-	500	
2026	12,000	12,000	-	-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임기제 마급 유현진	전화	5346
-----	-------	------------	-----	------------	----	------

영아기 육아용품 지원

사업기간	2026. 9.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육아용품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해당조례	김포시 보육 조례	제12조 제2호
		제12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0	13,000	0	0	0	13,000	13,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000				13,000	13,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000	
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영아기 육아용품 지원 - 물품장 제작 설치 : 4,000,000원 = 4,000 - 물품구입(신생아용 카시트, 바운서, 침대 등) : 354,000원 * 24개 ≙ 8,500 - 기타운영비(휴대용소독기, 건전지 등) : 500,000원 = 500		

□ 예산요구 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김포시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다양한 보육인프라 제공
- 육아용품 가격 상승 및 양육비 증가로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단기간 사용 육아용품 대여를 지원하여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물품보관장 및 안내판 설치비, 육아용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반영	-	-
일자	2025.11.	-	-	-	-	-	-	-	2023.2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9.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의견 수렴
 - 2026. 10. : 물품장 제작·설치
 - 2026. 11. ~ 2026. 12. : 육아용품 구입 및 배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장 유인숙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원태	전화	5318
-----	-------	------------	-----	------------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981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4,177,190	4,021,190	4,208,400	0	0	-187,210	-156,000	
국비		0					0	
도비	1,253,157	1,206,357	1,262,520			-56,163	-46,800	
시비	2,924,033	2,814,833	2,945,880			-131,047	-109,200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7,210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처우개선비 : 경정(169,150원*1,981명*12월)-기정(169,170원*2,073명*12월) =	-187,210	

□ 예산요구 사유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2,073명 → 1,981명 사업량 감소)
[경기도 보육정책과-15199(2026.7.3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구 분		지원단가	지원인원
	합 계			2,042
	정부지원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590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200천원/인	1,094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322
	월급형 대체교사		월 120천원/인	34
2025	구 분		지원단가	지원인원
	합 계			2,025
	정부지원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688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200천원/인	1,033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269
	월급형 대체교사		월 120천원/인	35
2026	구 분		지원단가	지원인원
	합 계			1,926
	정부지원	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150천원/인	691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월 200천원/인	979
	누리과정 담당교사		월 110천원/인	223
	월급형 대체교사		월 120천원/인	33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206,600	4,206,570	-	30	
2025	4,177,190	4,108,900	-	68,290	
2026	4,208,400	2,002,900	-	2,205,5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873명		
사업목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221,728	1,189,690	1,216,920	0	0	-27,230	-32,038	
국비		0					0	
도비	610,864	594,845	608,460			-13,615	-16,019	
시비	610,864	594,845	608,460			-13,615	-16,019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23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추가 처우개선비 : 경정(52,930원*1,873명*12월)-기정(52,930원*1,916명*12월)	-27,230	

□ 예산요구 사유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1,916명 → 1,873명 사업량 감소)
[경기도 보육정책과-15199(2026.7.3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지원 담임교사	월 80,000원	1,879명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월 30,000원	
	누리담당교사	월 90,000원	
2025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지원 담임교사	월 80,000원	1,834명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월 30,000원	
	누리담당교사	월 90,000원	
2026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정부지원 담임교사	월 80,000원	1,805명
	정부미지원 담임교사	월 30,000원	
	누리담당교사	월 90,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256,940	1,196,620	-	60,320	
2025	1,221,728	1,183,030	-	38,698	
2026	1,216,920	588,100	-	628,82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741명		
사업목적	일정수준에 도달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취약보육 활성화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942,000	921,880	944,400	0	0	-22,520	-20,120	
국비		0					0	
도비	282,600	276,564	283,320			-6,756	-6,036	
시비	659,400	645,316	661,080			-15,764	-14,084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520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특수근무수당 : 경정(44,120원*1,741명*12월)-기정(44,110원*1,784명*12월) =	-22,520	

□ 예산요구 사유

- 취약보육의 활성화와 장애아·영아·다문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교사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반영(1,784명 → 1,741명)
[경기도 보육정책과-15199(2026.7.3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명)
	합계		1,775
	장애아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100천원/인	29
	영아기본, 다문화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50천원/인	1,140
	영아심화 특수근무수당	월 30천원/인	606
2025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명)
	합계		1,669
	장애아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100천원/인	27
	영아기본, 다문화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50천원/인	1,072
	영아심화 특수근무수당	월 30천원/인	570
2026	구 분	지원금액	지원인원(명)
	합계		1,663
	장애아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100천원/인	35
	영아기본, 다문화전문 특수근무수당	월 50천원/인	1,035
	영아심화 특수근무수당	월 30천원/인	593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008,000	893,810	-	114,190	
2025	942,000	879,890	-	62,110	
2026	944,400	436,320	-	508,08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미숙	전화	5328
-----	-------	------------	-----	------------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개반(독립반), 17개반(통합반)		
사업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긴급보육 또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양육자의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78,920	360,120	321,240	0	0	38,880	81,200	
국비	139,460	180,060	160,620			19,440	40,600	
도비	69,730	90,030	80,310			9,720	20,300	
시비	69,730	90,030	80,310			9,720	20,3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8,880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통합반> ·보육료:경정(340,000원*17개반*12월)-기정(320,000원*13개반*12월) ≒ 19,680 ·인건비및운영비: 경정(400,000원*17개반*12월)-기정(400,000원*13개반*12월) = 19,200		

□ 예산요구 사유

- 가정양육대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급·비상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상반기 시간제보육(통합반) 3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통합반 13개반 → 17개반)
[경기도 보육정책과-15157(2026.7.3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3개반 운영, 통합반 10개반 운영
2025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3개반 운영, 통합반 12개반 운영
2026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독립반 5개반 운영, 통합반 17개반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35,632	188,905	-	46,727	
2025	278,920	227,678	-	51,242	
2026	321,240	190,472	-	130,768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미숙	전화	5328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3개소		
사업목적	우수한 가정·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749,340	950,400	749,340	153,720	0	47,340	201,060	
국비		0					0	
도비	659,419	836,352	659,419	135,274		41,659	176,933	
시비	89,921	114,048	89,921	18,446		5,681	24,127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7,34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경정(3,443,478원*23개소*12월)-기정(3,271,956원*23개소*12월) =	47,340	

□ 예산요구 사유

- 우수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제공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경기도 보육정책과-14825(2026.7.24.)]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사 업 명	지원개소(월)	비 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0	- 10월 1개소 신규 지정으로 19개소→20개소
2025	사 업 명	지원개소(월)	비 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3	- 10월 3개소 신규 지정으로 20개소→23개소
2026	사 업 명	지원개소(월)	비 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3	- 공공형 어린이집 23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672,205	669,360	-	2,845	
2025	749,340	742,080	-	7,260	
2026	903,060	519,645	-	383,415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9
-----	-------	------------	-----	------------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3개소		
사업목적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활성화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품질 유지 및 보육서비스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08,640	379,200	308,640	97,920	0	-27,360	70,560	
국비		0					0	
도비	92,592	113,760	92,592	29,376		-8,208	21,168	
시비	216,048	265,440	216,048	68,544		-19,152	49,392	
기타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36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활성화비 : 경정(1,373,913원*23개소*12월)-기정(1,473,043원*23개소*12월) =	-27,360	

□ 예산요구 사유

-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운영비 지원 필요
-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40천원 및 안심보육반 운영 1개반당 월 400천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반 기준 미충족에 따른 운영활성화비 미지원
- 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예산 감액[경기도 보육정책과-14825(2026.7.24.)]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사 업 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30천원/531명	20개소	재원아동(현원) 기준
2025	사 업 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40천원/717명	23개소	재원아동(현원) 기준
	안심보육반 운영활성화비 지원	월 400천원/4개반	4개반	
2026	사 업 명	지원금액	지원개소	비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월 40천원/717명	23개소	재원아동(현원) 기준
	안심보육반 운영활성화비 지원	월 400천원/11개반	11개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15,890	197,520	-	18,370	
2025	308,640	304,080	-	4,560	
2026	406,560	209,720	-	196,84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신지수	전화	5329
-----	-------	------------	-----	------------	----	------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9개소		
사업목적	취업부모의 야간연장 보육욕구 충족을 통하여 직장가정생활의 안정적 양립 추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제13호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360,800	285,333	266,400	0	0	18,933	-75,467	
국비		0				0	0	
도비	108,240	85,600	79,920			5,680	-22,640	
시비	252,560	199,733	186,480			13,253	-52,827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933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 경정(300,980원*79개소*12월)-기정(300,000원*74개소*12월) =	18,933	

□ 예산요구 사유

- 취업부모의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 반영(74개소 → 79개소) [경기도 보육정책과-13094(2026.7.3.)]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야간연장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 월 평균 64개소, 월 400천원
2025	· 야간연장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 월 평균 77개소, 월 400천원
2026	· 야간연장 운영비(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 월 평균 85개소, 월 4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73,600	273,600	-	-	
2025	360,800	360,800	-	-	
2026	266,400	210,400	-	56,0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희경	전화	5327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차량운영비)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39대		
사업목적	보육취약지역에 대한 보육 아동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개선하여 보육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86,000	117,400	86,000	0	0	31,400	31,400	
국비	51,600	70,440	51,600			18,840	18,840	
도비	24,080	32,872	24,080			8,792	8,792	
시비	10,320	14,088	10,320			3,768	3,768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1,400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운영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경정(250,850원*39대*12월)-기정(183,760원*39대*12월) =	31,400	

□ 예산요구 사유

- 보육취약지역인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아동의 접근성 및 이동성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26. 5월부터 차량운영비 증액지원 (200천원 → 300천원)
-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경기도 보육정책과-14589(2026.7.2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6. : 상반기 차량운영비 지원
 - 2026. 12. : 하반기 차량운영비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개소(대수)
	총 계	91,200천원	
	상반기 차량운영비	43,200천원	28개소(37대)
	하반기 차량운영비	43,000천원	27개소(36대)
2025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개소(대수)
	총 계	86,000천원	
	상반기 차량운영비	43,000천원	27개소(39대)
	하반기 차량운영비	43,000천원	27개소(38대)
2026	구 분	지원금액	지원개소(대수)
	총 계	-	
	상반기 차량운영비	53,000천원	27개소(37대)
	하반기 차량운영비	-	12월 집행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91,200	86,200	-	5,000	
2025	86,000	86,000	-	-	
2026	86,000	53,000	-	33,000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30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7개소		
사업목적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1,820	21,470	18,635	0	0	2,835	-350	
국비	13,092	12,882	11,181			1,701	-210	
도비	6,110	6,012	5,218			794	-98	
시비	2,618	2,576	2,236			340	-4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835	
어린이집 운영 지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경정(255,595원*7개소*12월)-기정(221,845원*7개소*12월) =	2,835	

□ 예산요구 사유

-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보육 아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소재 법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개소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월 200~280천원 운영비 차등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경기도 보육정책과-14589(2026.7.21.)]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2025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2026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7개소 운영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1,337	15,620	-	5,717	
2025	21,820	21,400	-	420	
2026	18,635	10,730	-	7,905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9급 신유림	전화	5330
-----	-------	------------	-----	------------	----	------

어린이집 운영 지원(급식위생관리 지원)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56개소		
사업목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급식위생관리 지원으로 급식의 질 향상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96,429	164,811	221,597	0	0	-56,786	-31,618	
국비	117,857	98,887	132,958			-34,071	-18,970	
도비	55,000	46,147	62,047			-15,900	-8,853	
시비	23,572	19,777	26,592			-6,815	-3,795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6,786	
급식위생관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운영비: 경정(164,811,000원)-기정(221,597,000원)	≒ -56,786	

□ 예산요구 사유

- 영유아 정원 및 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및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대상 개소당 월 30만원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반영(사업량 변경 없이 예산액 감액)
[경기도 보육정책과-15088(2026.7.3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2026. 12. :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급식위생관리 지원 57개소
2025	· 급식위생관리 지원 56개소
2026	· 급식위생관리 지원 44개소 지원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05,200	179,700	-	25,500	
2025	196,429	167,700	-	28,729	
2026	221,597	76,200	-	145,397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장 김순주	담당자	사회복지8급 김미숙	전화	5328
-----	-------	------------	-----	------------	----	------

어린이집 확충(리모델링)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구래동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저출산 극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해당조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김포시 보육조례	제29조(보조금의 지급) 제29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3회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190,000	55,000	130,000	0	0	-75,000	-135,000	
국비	95,000	27,500	65,000			-37,500	-67,500	
도비	47,500	13,750	32,500			-18,750	-33,750	
시비	47,500	13,750	32,500			-18,750	-33,75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5,000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 리모델링 : 경정(55,000천원*사업면적 250㎡ 이하 1개소) - 기정(130,000천원*사업면적 450㎡ 이상 1개소)	= -75,000	

□ 예산요구 사유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1개소) 리모델링 지원
- 2026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기자재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 예산증감 사유

- 기정 예산대비 면적이 작은 어린이집 선정으로 인한 확충(리모델링) 사업비 예산 감소
(•면적 450㎡ 이상 : 130,000천원 × 1개소 = 130,000천원 / •면적 250㎡ 이하 : 55,000천원 × 1개소 = 55,000천원)
- 2026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기자재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 [경기도 보육정책과-1789(2026.1.22.)호]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0. ~ 2025. 11. :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대상 모집공고
 - 2025. 12. : 1차 사전적격심사
 - 2026. 1. : 2차 위탁심사(수탁기관선정위원회) 및 선정
 - 2026. 3.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 무상임대협약
 - 2026. 4. ~ 2026. 8. : 리모델링 실시설계, 공사 착공·준공 및 기자재비 지원
 - 2026. 9. : 어린이집 개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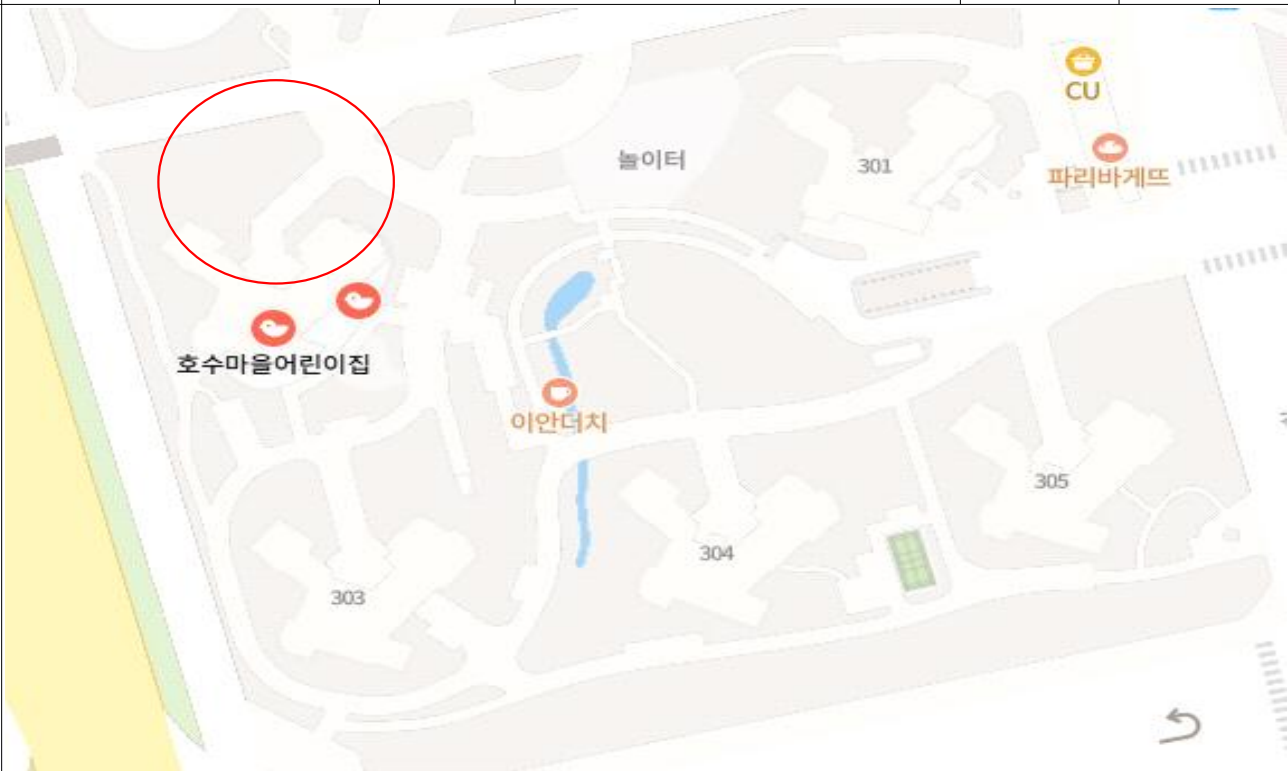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4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3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풍무푸르지오	풍무동	300명	2024.08.01.	전환
	2	시립기쁨어린이집	구래동	51명	2024.08.01.	전환
	3	시립고촌센트럴자이어린이집	고촌읍	45명	2024.08.01.	
2025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3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시립아이월드어린이집	풍무동	42명	2025.04.01	전환
	2	시립다예린어린이집	구래동	39명	2025.12.01.	전환
	3	시립운양래미안어린이집	운양동	74명	2025.09.01	전환
2026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1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행정동	정원	개원일	비고
	1	호수마을어린이집	풍무동	42명	2026.09.(예정)	전환

○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295,000	273,254	-	21,746	
2025	190,000	157,505	-	32,495	
2026	130,000	11,233	-	118,767	7.31.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아동보육과	사업규모	1개소	3회추경 요구액 (천원)	-75,000
부기명 (세부사업)	어린이집 확충(리모델링)	사업위치	구래동 6874-6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시설팀장	김성철	담당자	시설8급 박수민	전화	5336
-----	-------	--------	-----	-----	----------	----	------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자체)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청 아동보육과
사업규모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의 통합서비스관리 강화 및 위기아동 적극 보호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아동복지법	제13조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
		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026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0,874	23,165	21,721	0	0	1,444	2,29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874	23,165	21,721			1,444	2,29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44	
인력운영비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자체)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 명절휴가비 : 경정(2,842,540원*1명*2회*60%) - 기정(2,801,960원*1명*2회*60%) = 48 · 시간외근무수당 : 경정(23,460원*15시간*1명*12월) - 기정(23,130원*15시간*1명*12월) = 59 · 연차유급휴가수당 : 경정(125,120원*1명*10일) - 기정(123,360원*1명*10일) = 17 · 기본급 부족분 : 경정(580,000원*1명*12월) - 기정(470,000원*1명*12월) = 1,320		

□ 예산요구 사유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필요 서비스 적시 제공 등 위기 아동 적극 보호 실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임금테이블 기준으로 산정된 인건비를 2026년 기준으로 재산정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예산 증액
※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함에 따라 국비 지원 기준액 초과 인건비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12.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인건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7. 31.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지원
2025	-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지원
2026	-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16,572	15,338	-	1,234	
2025	20,874	19,890	-	984	
2026	21,721	7,307	-	14,414	7.31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장 배정민	담당자	사회복지9급 김유정	전화	5344
-----	-------	------------	-----	------------	----	------